

(20241214)

2026. 9. 18



가
Korea Law Service Center

-
- 1.
 - 2.
 - 3.
 - 4.



[2026. 3. 10.] [21438 , 2026. 3. 10.,]

() 044 - 203 - 5226

1 < 2009. 1. 30.>

1 () 가

,

. < 2024. 2. 6.>

[2009. 1. 30.]

2 () . <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24. 2. 6., 2025. 10. 1.>

1. “ ” , 가 [(液化)]

.

2. “ ” , , , 가

(.) .

가. : , (溶劑), , , [

(殘渣油) (溜分)]

(副生燃料油:)

. 가 : . 가

3. “ ”

.

3 2. “ ”

4. “ ” ()

() .

5. “ ” .

5 2. “ ” .

가. 「 」 154 (“ ”)

. 「 」 197 (“

”)

(.

)

6. “ ” (業)

7. “ ” 5

8. “ ” 9 ()

8 2. “ ” 9 2

9. “ ” 10

10. “ 가 ” (助燃劑), 가 ()

」 2 1

• (

)

(11)

가. ()

. (•

.)

.

.

가

11. “ ”

(가)

(), (

)

12. “ • ” •

13. “ ”

14. “ • ” 32 (

)

15. “ ” 33

[2009. 1. 30.]

3 () 가

5

. < 2013. 3. 23., 2025. 10.

1.>

1.

2.

3.

4.

[2009. 1. 30.]

4 () 가 가 「 가 」, 「 가
」 「 가
」

[2009. 1. 30.]

2

5 ()

. < 2013. 3. 23., 2025. 10. 1.>

1

.< 2013.

3. 23., 2025. 10. 1.>

2

7

.< 2017. 12. 12., 2025. 10. 1.>

3

(
)

.< 2017. 12. 12., 2025. 10. 1.>

1

2

.< 2017. 12. 12.>

[2009. 1. 30.]

6 ()

. < 2010. 6. 8., 2014. 1. 21., 2017. 4. 18.>

1.

2.

3.

4. (2)

5.

6. 13 1 (1 3) 2

7. 가 1 6
[2009. 1. 30.]

7 ()

1. 가
2. 가
3. 가

. < 2010. 3. 31., 2016. 12. 27.>

1. 「
2. 「 가(換價)
3. 「 , 「 「
4. 1 3
[2009. 1. 30.]

8 () 7 가
13 1 (14
) , 가
()가

. < 2014. 1. 21.>

[2009. 1. 30.]

9 () (가 가
. , 11 2, 12 17)

. <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2025. 10. 1.>

1. 5 1 가 5 ()

2.

3.

4. 가

10

5. 4 가

6. 「 」 (“ ”)가 16 2

1 가

. < 2013. 3. 23., 2025. 10. 1. >

1

.

6

8

,

6

“

”

“

” , 6 “ 13 1 ” “ 13 2 ” , “ ”
 “ ” , 7 “ ” “ ” , “ ”
 ” “ ” , 8 “ ” “ ”
 , “ 13 1 ” “ 13 2 ” .
 [2009. 1. 30.]

9 2()

. , 2 5 2가

(26)

. < 2025. 10. 1. >

1 가

< 2025. 10. 1. >

6 , 7

1 8 . 6 “ ” “ ”
 , “ 13 1 ” “ 13 3 ” , 7 1 “ ” “
 ” , 8 “ ” “ ” , “ 13
 1 ” “ 13 3 ” , “ ” “ ”
 [2017. 4. 18.]

10 ()

. . . (“ . ”

) . . ()
 ,

. < 2010. 6. 8.,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1

• • •

< 2013. 3. 23., 2025. 10. 1.>

1

2

가

• • •

.< 2013. 3. 23., 2025. 10. 1.>

•

•

•

2

3

•

7

.< 2017. 12. 12.>

•

•

•

4

(

)

.< 2017. 12. 12.>

1

2

•

•

•

1

.< 2017. 12. 12.>

,

6

8

6

“

”

“

”

,

6

“

13

1

”

“

13

4

”

,

“

”

“

”

,

7

“

”

“

”

,

“

”

“

”

,

8

“

”

“

”

,

“

13

1

”

“

13

4

”

.< 2017. 4. 18., 2017. 12. 12.>

[

2009. 1. 30.]

11 (

)

5

•

9

10

(

“

”

)

,

•

•

•

. < 2013. 3. 23., 2025. 10. 1.>

1

,

•

•

•

.< 2013.

3. 23., 2025. 10. 1.>

,

•

•

•

가

.< 2013. 3.

23., 2025. 10. 1.>

,

•

•

•

2

가

1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11 2() 5 , 9 10
가 2 (가
)

. < 2012. 1. 26., 2014. 1. 21., 2017. 4. 18., 2018. 4.

17.>

1.

가. 13 1 9 12 , 12 2 13 15

. 13 6

2.

가. 13 2 7 1 9 12 , 12 2 13
15

. 13 6

3.

가. 13 4 8 1 9 12 , 12 2 13
15

. 13 4 9

. 13 6

[2010. 6. 8.]

12 (.) .

.

.

.

.

.

.

.

.

.< 2013. 3. 23., 2017. 4. 18., 2025. 10.

1.>

2

가

,

가

.<

2017. 12. 12.>

• • • 2
,

.< 2020. 2. 4., 2025. 10. 1.>

[2009. 1. 30.]

12 2()

가 (“ ”) . < 2025. 10.

1.>

.
가 , ,

.

「 」 「

」

[2014. 3. 18.]

12 3()

1.

2.

3.

4.

5.

[2014. 3. 18.]

12 4()

, .

1. , ,

2.

[2014. 3. 18.]

13 () 가

(

.) 6

. , 1 3 5

. <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2025. 10. 1.>

1. 5 1 2

2. 5 5

3.

4. 6 1 5 7
(6 가)

5. 12 1

1

6. 17

7. 21 1

8. 22 1

9. 25 1

2

.

10. 26 2

11. 27

12. 29 1 1 가

12 2. 29 1 3 가 .
. 가 . .

.

13. 30 1 (封印)

14. 38 1 .

15. 39

가

6

. , 1 3 5

.<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1. 9 1

2. 9 3

3.

4. 9 4 6 1 5 7

(6 가

)

5. 12 1

1

6. 17

7. 1 7 12 , 12 2 13 15

가

6

. , 1 • 2 • 3 • 5 6

.< 2017. 4. 18., 2025. 10. 1.>

1. 9 2 1

2.

3. 9 2 3 6 1 5 7

(6 가
)

4. 1

5.

6.

7. 1 10 • 14 15

, • • 가

6

. , 1

, 4 6 9

.<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2025. 10. 1.>

1. 10 1 2

2. 10 6

3. 10 6

4.

5. 10 7 6 1 5 7

(6 가
)

6. 12 1

1

7. 17

8. 1 7 12 , 12 2 13 15

9. 「 」 가 .

• • ,
• • •

1 4 .<

[2013. 3. 23., 2017. 4. 18., 2025. 10. 1.>](#)

, • • 1 4

가

• •

.< [2010. 6. 8., 2013. 3. 23., 2017. 4. 18., 2025. 10. 1.>](#)

[2009. 1. 30.]

14 () , • • •

• 가

13

20

, (着色劑) • (識別劑) 가

• . <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25. 10. 1.>](#)

1. 가 13 1 7 12 , 12 2 13 15

2. 가 13 2 7

2 2. 가 13 3 7

3. 가 13 4 2 • 3 8

가 13 1 2

가 2 2

.< [2010. 6. 8., 2013. 3. 23., 2025.](#)

[10. 1.>](#)

17

가

13 1 • 2 4

.< [2013. 3. 23., 2017. 4. 18., 2025. 10. 1.>](#)

1

2 3 , .<

[2013. 3. 23., 2025. 10. 1.>](#)

, • 1 3
가

「 • 」 , 1 3
13 • •

.< 2010. 6. 8., 2013. 3. 23.,
2013. 8. 6., 2017. 4. 18., 2020. 3. 24., 2025. 10. 1.>

1 3 「

」 (“
”) , • • •

.< 2013. 3. 23., 2014. 1. 1., 2025. 10. 1.>

[2009. 1. 30.]

14 2(가) , •
• • 가 29 1 1
가 • • • • 13
14 1 2

. <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1 ,

.< 2013. 3. 23., 2025. 10. 1.>

[2011. 11. 14.]

[2012. 1. 26.]

3

15 () 가

. < 2013. 3. 23., 2025. 10. 1.>

1 .

- 1.
- 2.
- 3.
- 4.

1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16 ()

15 1

. < 2013. 3. 23., 2025. 10. 1.>

1

. < 2013. 3. 23., 2025. 10. 1.>

2

. < 2014. 1. 21., 2025. 10. 1.>

3

. < 2014. 1. 21., 2025. 10. 1.>

[2009. 1. 30.]

[2014. 1. 21.]

17 ()

(“ ”

) 가

. < 2010. 6. 8.>

1.

2.

3. 10 1

(“

”) 1

.

[2009. 1. 30.]

4

•

< 2009. 1. 30.>

18 (•)

가

. , 17

. <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1.

•

2. 가

1

. < 2013. 3. 23., 2025. 10. 1.>

1. 1 1 :

1 36 (가

가

가

1

36

)

2. 1 2 : 가 가

1 , , , ,
.
1 가
가

.< 2013. 3. 23., 2025. 10. 1.>

1 가

, 4 가

.< 2013. 3. 23., 2025. 10. 1.>

1 2 (純計

) .<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1. .

2. 23 가

1 4 가 「

」 36 .< 2026. 3. 10.>

<2026. 3. 10.>

1 4 가

.< 2012. 1. 26., 2014. 1. 1.>

[2009. 1. 30.]

19 () 18

가 17

(還給)

, , 가

. <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1 가

, 가 가

.< 2013. 3. 23., 2025. 10. 1.>

1 2

1 5

.< 2013. 3. 23., 2025. 10. 1.>

1 3 가

.< 2014. 1. 1.>

1 4 가 , ,

.

[2009. 1. 30.]

19 2() 19

(過多還給) . <

2013. 3. 23., 2025. 10. 1.>

1

19 3

.< 2013. 3. 23., 2025. 10. 1.>

1 2

가

< 2014. 1. 1.>

1 3

가

,

,

[2009. 1. 30.]

20 () 18 가

, 19

•

19 2

. <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1

.< 2013. 3. 23., 2025. 10. 1.>

2

「

」

.

1

.<

2013. 3. 23., 2014. 1. 1., 2025. 10. 1.>

[2009. 1. 30.]

5

< 2009. 1. 30.>

21 ()

가

가

•

•

•

「

」

(

“

”

),

•

,

(

“

”

) . < 2013. 3. 23., 2025. 10. 1.>

1. .

2. . 가

3.

4.

5. .

6. 가

7. (定量)

8. . 가(等價)

9.

10.

11.

12. .

13.

1 가

.< 2013. 3. 23., 2025. 10. 1.>

가

「

」

.

가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22 (. .)

가 21

.<

2013. 3. 23., 2025. 10. 1.>

1.

2. .

3.

4.

1 가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23 (가) . 가

가

가

. 가

. < 2013. 3. 23., 2025. 10. 1.>

1

가

. < 2013. 3. 23., 2025. 10. 1.>

1

가

.

가

. < 2010. 4. 12.>

[2009. 1. 30.]

6

24 ()

. 「 」

< 2013. 3. 23., 2025. 10. 1.>

1

. < 2013. 3. 23., 2025. 10. 1.>

1

.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25 () . 10 1

25

2 (“ ”)

(“ ”) . ,

(“ ”)

. < 2010. 6. 8., 2013. 3.

23., 2025. 10. 1.>

「

」

가

. . .

. < 2013. 3. 23., 2017. 12. 12., 2025. 10. 1.>

1

2

.

. < 2013. 3. 23., 2025. 10. 1.>

.< 2013. 3. 23., 2025. 10.

1.>

1. 「 가 」 23

2.

3. 2 28 1 가

1

.< 2013.

3. 23., 2025. 10. 1.>

1.

2. 2 28 2 가

,

•

,

.< 2013.

3. 23., 2025. 10. 1.>

<2012. 1. 26.>

[2009. 1. 30.]

25 2()

. < 2025. 12. 2.>

.< 2014. 1. 21., 2015. 1. 28., 2017. 12.

12., 2025. 10. 1., 2025. 12. 2.>

1. •

2. • •

3. 가

4.

5. •

6. • •

7. •

8. •

9. 「 가 」 27 가

10. 가 •

11. •

•

[2009. 1. 30.]

25 3() 41 2

[2009. 1. 30.]

25 4() 1 9

1

[2009. 1. 30.]

25 5()

[2009. 1. 30.]

25 6()

. < 2013. 3. 23., 2025. 10. 1.>

1.

2.

3.

[2009. 1. 30.]

25 7(「 」) 「

」 「 」

[2009. 1. 30.]

25 8()

[2009. 1. 30.]

26 () , , ,

10 1 「 」

24 1

(“ ”) . < 2010. 6. 8., 2017. 4.

18.>

5 1 ,

「 」

가 .

< 2011. 11. 14., 2017. 4. 18.>

2 , ,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26 2()

24 1

.

1 5 1

, 「 」 가 .

.< 2017. 4.

18.>

1 , ,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27 () 24 1

25 1 • 2

()

.

.

[2009. 1. 30.]

28 ()

6

. , 1 2 .<

2013. 3. 23., 2025. 10. 1.>

1.

2.

3. 6

4.

5. 25 3

6. 25 4

7. 25 6 . .

8.

가

6

. , 1

.< 2013. 3. 23., 2025. 10. 1.>

1.

2.

3. 25 3

4. 25 5

5. 25 6

•

•

1 2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29 (가) 가

.< 2011. 7. 25., 2012. 1. 26.>

1. 가 • • • •

2. 가 10 33 •

가 가

3. 가 • • •

가 • • •

1 1 가

.<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25. 10. 1.>

1. 가 5 1

2. , 가

3. 가 26 2

4. • 2 10

•

5.

5 2. 가 (

•

)

6.

•

가

•

,

[2009. 1. 30.]

[2012. 1. 26.]

30 (가) , .

. . 29

. 4 5 .

가 「 」 (代執行) .

<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1. 가 . .

2. . . 가 .

3. 1 2 . .

4. 1 2

5. 가 . .

, . . .

가 .

가 . (“ 가 ”) 가 29 가

. . . 가 .

. 가

가 .<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2 가

[2009. 1. 30.]

[2012. 1. 26.]

7

31 ()

.

. < 2013. 3.

23., 2025. 10. 1.>

1

.< 2013. 3. 23., 2025. 10. 1.>

.

.

• (“ ” .
)가 • • •

.< 2013. 3. 23., 2025. 10. 1.>

1

3 •

4

•

•

3

4

•

.< 2013. 3. 23., 2025. 10. 1.>

25 6

.< 2012. 1. 26.>

[2009. 1. 30.]

32 (•) •

• ,

. < 2013. 3. 23., 2025. 10. 1.>

1.

2.

가

1

가

.<

2013. 3. 23., 2025. 10. 1.>

1

•

•

•

6

8

,

11

,

12

26

•

6

“

”

“

•

”

,

6

“

13

1

”

“

34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11

“

5

”

“

32

”

,

12

“

”

“

•

”

,

26

“

”

“

•

”

,

“

”

“

”

,

“

24

1

”

“

31

1

”

,

“

5

1

”

“

32

1

”

,

“

”

“

”

•

[

2009. 1. 30.]

33 ()

•

•

•

•

. < 2013. 3. 23., 2025.

10. 1.>

1

6 8 , 11 12 .

6

6 “ 13 1 ” “ 34 ” , “ ” “ ”

, 7 “ ” “ ” , “ ”

“ ” , 8 “ ” “ ”

” , 11 “ 10 ” “ 33 ” , 12 “ ” “ ”

”

[2009. 1. 30.]

33 2() 32 33
가 2

. < 2012. 1. 26.>

1.

가. 34 1 , 1 2, 2 3 .

. 34 10 11 .

2.

가. 34 1 , 1 2, 2 3

. 34 10 11

[2010. 6. 8.]

34 () , . . .

6

. , 4 7

. <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1. 29 1 1 가 . . .

1 2. 30 1

2. 31 3

4

•

3. 31 5

4. 32 1 33 1

5. •

6. 32 4 33 3 6 1 5 7

(6 가

)

7. 32 4 33 3 12 1

1

•

7 2. 32 4 26 2

8. 32 3 33 2

9. 36

10. 38 1 •

11. 39

[2009. 1. 30.]

35 () , • • •

• 가 34 1 • 1 2 • 2 • 3 • 10 11

가 34 1 3 , 8 • 10

11 34 5

• , • 가

•

•

<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 가 34 8

.< 2013. 3. 23., 2025. 10. 1.>

• 가 36

34

.< 2013. 3. 23., 2025. 10. 1.>

1

2 3 , .<

2013. 3. 23., 2025. 10. 1.>

, • 1 3
가

「 • 」 , 1 3
34 •

.< 2010. 6. 8., 2013. 3. 23., 2013. 8.

6., 2020. 3. 24., 2025. 10. 1.>

1 3

, • •
.< 2013. 3. 23., 2014. 1. 1., 2025. 10. 1.>

[2009. 1. 30.]

36 ()

•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37 (•)

• 가
 , 36

.< 2013. 3. 23., 2014. 1. 21., 2025. 10. 1.>

1 1 36 (가 가 가 1 36)

1 , , , ,

•

1 가

가

.< 2013. 3. 23., 2025. 10. 1.>

1 가

, 4 가

.< 2013. 3. 23., 2025. 10. 1.>

1 4 가

.< 2014. 1. 1.>

가 , •

, 18 7 , 19 ,

19 2 20 . 19 “ 18 ” “ 37 ” , “ ”
 “ ” , 19 2 “ 19 ” “ 37 ” , 20 “
 18 ”, “ 19 ” “ 19 2 ” “ 37 ” .< 2012. 1. 26., 2026. 3.
 10.>

[2009. 1. 30.]

37 2() . < 2025. 10. 1.>

1. . . .
- 2.
- 3.
- 4.

1

• .< 2025. 10. 1.>

.< 2025. 10. 1.>

[2024. 2. 6.]

8 < 2009. 1. 30.>

38 () , • •
 ,
 ,
 , 21 1 29 •
 39
 () • •
 (試料) . <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7. 4. 18., 2025.
 10. 1.>

22

29 • 39

.<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1 2

[2009. 1. 30.]

2. 「 」
3. 「 」 가
- 4.

[2014. 1. 21.]

[38 3 <2024. 2. 6.>]

39 ()

. 1 4 .
 . <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1. 29 1 1 가 .

2. (使用公差)

3. 가 가

4. 2 3 가 . . .

5. . .

6. 23

7.

8. , 「 , , 2 1 .

9. 「 」 18 1 9 「 . . 」 15 1 3

10.

() 10 6

.< 2010. 6. 8., 2013. 3. 23., 2017. 12. 12., 2025. 10. 1.>

1.

2. • 10 1

3. 「」 2 4 가
가
(「」 2 1 1)

4. , , , , , , , ,
「」 2 1
• .

.<

[2011. 11. 14., 2013. 6. 7., 2014. 1. 21.>](#)

1. 「」 43 「가가」
32
2. 「」 43 가
「」 2 3

3. 「」 106 2 1 1 •
•

가

.< [2024. 2. 6.>](#)

[2009. 1. 30.]

39 2() , • •
• , 2

.< [2013. 3. 23.,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2025. 10. 1.>](#)

1. 25 2 24 1

2. 29 가

3. 31 4
1

4. • • • •

1. 18 1 • 4 37 1 • 4 가
 2. 29 39 1 1 4 , 8 10

1 1 2 「 」
 41 2 1 「 가가 」 54

.< 2015. 1. 28.>

, • •
 , 「

」 .< 2013. 3. 23., 2015.

1. 28., 2025. 10. 1.>

1. 18 1 • 4 37 1 • 4 가
 2. 29 39
 1 3

가 .< 2015. 1. 28.>

[2012. 1. 26.]

42 (•)

가 • •
 • . <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43 (•)

• • • . < 2013. 3. 23.,
 2025. 10. 1.>

, • •
 • •

가 .< 2013. 3.

23., 2025. 10. 1.>

2 , • • 30

1 1 4
 가 가

.< 2012. 1. 26., 2013. 3. 23., 2025. 10. 1.>

[2009. 1. 30.]

9 < 2009. 1. 30.>

44 ()

5

2

. < 2011. 7. 25., 2012. 1. 26.>

1. <2014. 1. 21.>

2. <2014. 1. 21.>

3. 29 1 1 가
 , 3 가 .
 , , , 가 . . .

4. <2014. 1. 21.>

5. 30 1

6. 39 1 1

[2009. 1. 30.]

44 2()

3

2

. < 2015. 1. 28.>

1. 5 1

2. 9 1 (가 가
)

3. 32 1 .

[2014. 1. 21.]

45 ()

3

1

. < 2012. 1. 26., 2015. 1. 28.>

1. 13 1 2

2. 17

3. 22 1

4. 25 1 2

.

5. 27

6. 31 3 4

.

7. 31 5

8. 34 .

9. 36

10. 39 1 5 7 2

[2009. 1. 30.]

45 2() 38 4

2

2 . < 2024. 2. 6.>

[2014. 1. 21.]

46 () 2 5

. < 2010. 6. 8., 2012. 1. 26., 2015. 1. 28., 2017. 4. 18., 2017. 12. 12., 2024. 2. 6.>

1. 5 2

2. 10 1

3. 10 6 가

4. 13 4

5. 21 1

6. 26 2 (32 4)

7. 33

8. 34

9. 38 1 2 .

10. 39 1 2 4 , 8 10

11. 39 5 가

[2009. 1. 30.]

47 () 1 3

. < 2017. 4. 18.>

1. 9 2 1 2 5 2

2. 9 2 1

3. 10 2

4. 13 3

[2009. 1. 30.]

48 () , , 44 , 44 2, 45 , 46 47

(科) . ,

. < 2014. 1. 21.>

[2008. 12. 26.]

49 () 3

. < 2011. 7. 25., 2012. 1. 26., 2017. 4. 18., 2024. 2. 6.>

1. 5 1 2

2. 25 8

3. 29 1 2 가 10 33

• 가 가

4. 32 2

5. 38 1

• • •

6. 38 2 1 가

•

6 2. 38 3

7. 39 3 , , , , , , ,

,

•

1

.<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9 2 , 9 2 2 10 3

2. 12 (32 4 33 3)

•

3. 33 1

4. 38 1 2

, , , 「 」

5. 38 2 3 5 가

1 2 , •

• • • .< 2013. 3. 23., 2025. 10. 1.>

3

, • • •

.< 2013. 3. 23., 2014. 1. 1., 2025. 10. 1.>

[2009. 1. 30.]

50 () 20 43 2 • 3
 . 「 」 122 • 127 129
 132 . < 2012. 1. 26., 2014. 1. 21.>
 [2009. 1. 30.]

< 7240 ,2004. 10. 22.>

1 () 6 . , 31 37
 , 38 41 43 49
 2006 1 1 .
 2 () (5575
 .) 가
 . 가 가 5 1
 6 .
 3 ()
 .
 4 ()
 11 .
 5 () 가 .
 34 2 1 1 2 “ ” “ ”
 .
 37 2 “ 9 ” “ 10 ” .
 .
 3 11 “ 9 3 ” “ 10 4
 ” .
 .
 12 2 “ 9 ” “ 10 ” .
 가 .
 2 1 “ ” “ ” .
 18 4 2 “ 8 6 ” “ 9 5
 ” .
 46 2 “ 9 ” “ 10 ” .
 .
 35 .

35. 18 37

•

2 1 “ ” “ ” .

•

14 2 “ 9 ” “ 10 ” .

•

29 1 1 “ ” “ ” .

가

8 1 7 “ 23 ” “ 23 ”

•

27 3 “ ” “ ” .

28 1 “ ” “ ” “

25 1 ” “ 25 1 ” .

42 2 45 8 “ ” “ ”

•

•

5 1 1 “ 14 ” “ 14

35 ” .

5 1 2 “ 18 ” “ 18

37 ” .

•

49 2 3 “ 9 ” “ 10 ”

•

•

34 1 13 “ ” “ ” .

•

106 2 8 “ ” “ ” .

•

2 1 “ ” “ ” .

•

37 2 3 “ 9 ” “ 10 ”

•

6 ()

•

< 7428 ,2005. 3. 31.>()
 1 () 1 .
 2 4
 5 5 () <58>
 <59> .
 7 2 “ ” “ 「 」 ” .
 <60> <145>
 6

< 7755 ,2005. 12. 23.>
 () 3 .
 () 14 5 35 5
 .
 .
 () 25 6
 .

< 8237 ,2007. 1. 11.>
 .

< 8399 ,2007. 4. 27.>
 () 3 .
 ()
 .

< 8765 ,2007. 12. 21.>(가)
 1 () 6 . < >
 2 6
 7 ()
 9 1 “ ” “ (가
 . 12) ” , 44 2 “

” “ (가) ” .
9 5 49 1 2 .

< 8768 ,2007. 12. 21.>

() 6 .
(가) 19 19 2 (37 7
) 가
.

< 8852 ,2008. 2. 29.> ()

1 () . , . . . < > . . . , 6

2 5

6 () <365>

<366>

3 , 5 1 . 2 , 9 1
• 2 , 10 1 • 3 , 11 1 4 , 12 2 , 13
1 • 2 • 3 , 14
1 • 2 • 3 • 5 • 6 , 15 1 • 3 , 16
1 • 2 , 18 1 • 2 2 • 4 6 , 19
1 , 20 1 • 2 • 4 , 21 1 • 2 • 3 ,
22 1 • 2 , 23 1 • 2 , 24 1 • 2 •
3 , 25 1 • • 2 • 5 • 6 , 28 1 .
2 , 29 5 , 30 1 • 2 , 31 1 •
2 • 4 , 32 1 • 2 , 34 ,
35 1 3 • 5 • 6 , 36 , 37 1 • 4 • 5 ,
38 1 • 2 , 40 , 42 , 43 1 • 2 49 3 • 7
“ ” “ ” .
2 10 , 5 1 • 2 , 9 1 • 2 ,
10 1 • 2 • 3 , 11 2 , 12 2 , 13 4 , 14 4
• 5 , 21 1 , 25 1 • 3 6 ,
26 3 , 28 3 , 29 4 , 31 6 , 32 1 .
2 , 33 1 • , 35 4 • 5 , 38 1 • 2 , 39

• , •

4

가

가

4 ()

111

2

“ 「

」

29

5

”

“ 「

」

29

2

6

”

.

< 10219 ,2010. 3. 31.>()

1 ()

2011

1

1

.

2 10

11 ()

1(

2)

7

2

3

“ 「

」

”

“ 「

」

”

.

2! <61>

12

< 10246 ,2010. 4. 12.>

.

< 10353 ,2010. 6. 8.>

()

6

.

(

)

11

2

33

2

.

(

)

14

5

35

5

.

< 10958 ,2011. 7. 25.>

3

.

< 11081 ,2011. 11. 14.>

- 1 () 6 .
- 2 () 14 1 35 1
14 1 35 1
- 3 () 14 2 .
2

< 11234 ,2012. 1. 26.>

- 1 () 2012 5 15 .
- 2 (.) 11 2 33 2
- 3 () 18 7 8
- 4 () 39 2

< 11690 ,2013. 3. 23.>()

- 1 () .
- 2 5
- 6 () <391>
<392> .
2 10 , 5 1 , 2 , 9 1 ,
2 , 10 1 , 2 • 3 , 11 2 , 12 2 , 13 4 ,
14 1 , 4 , 14 2 2 , 21 1
, 25 1 , 3 , 4 , 2 ,
5 , 1 , 6 , 26 3 , 26 2 3 ,
28 3 , 29 2 5 , 31 6 , 32 1 ,
2 , 33 1 , 35 1 , 4 , 38 1 • 2 ,
39 2 2 , 39 2 , 41 3 41 2 2
“ ” “ ” .

3 , 5 1 , 2 , 9 1 ,
 2 , 10 1 , 3 , 11 1 4 , 12
 2 , 13 1 , 2 , 3
 , 5 , 14 1 , 2 • 3 • 5 •
 6 , 14 2 1 , 15 1 • 3 , 16 1 • 2 , 18 1
 , 2 2 , 4 • 5 , 6 ,
 7 , 8 , 19 1 3 , 19 2 1 • 2 , 20
 1 • 2 • 4 , 21 1 , 2 , 3 ,
 22 1 , 2 , 23 1 • 2 , 24 1 ,
 2 • 3 , 25 1 , 2 , 4 ,
 5 , 6 , 25 2 1 10 , 25 6 ,
 3 , 28 1 , 2 , 29 2
 6 , 30 1 , 2 , 31 1 , 2
 • 4 , 32 1 , 2 , 34 ,
 35 1 , 2 • 3 • 5 • 6 , 36 , 37 1 ,
 4 • 5 , 38 1 • 2 , 38 2 1 4 , 39 2
 , 40 , 41 2 1 , 41 3 1 , 2
 , 42 , 43 1 • 2 , 3 , 49 2 5
 3 • 4 “ ” “ ” .

<393> <710>

7

< 11873 ,2013. 6. 7.>(가가)

1 () 2013 7 1 .

2 17

18 ()

.

39 4 1 “ 「 가가 」 16 ” “ 「 가가 」 32 ”

.

19

< 11998 ,2013. 8. 6.>()

1 () 1 .

2

3 () 3)

3!

14 5 35 5 “ ”

“ ” 「 」

” .

3@ <71>

< 12154 ,2014. 1. 1.> ()

1 () .

2 ()

14 6 “ 「 」 (

” “ ” “ 「 」

(“ ”) ” .

18 9 , 19 4 , 19 2 3 , 20 4 , 35 6 , 37 6

49 4 “ ” “ ”

.

< 12294 ,2014. 1. 21.>

1 () 6 . , 6 , 18 , 19 ,

25 2, 29 , 37 , 39 2 .

2 () 11 2 1 가 • 2 가 • 3 가 ,

13 1 12 2 • 2 7 • 3 8 14 1 1

29 1 3 .

3 () 39 1 7 2

39 4 3 .

.

4 ()

(9 4 , 10 5 32 4 ,

.

)

8 (

9 4 , 10 5 32 4)

5 () 6 2
10429 2

< 12441 ,2014. 3. 18.>
6

< 13085 ,2015. 1. 28.>
6

< 14476 ,2016. 12. 27.> ()
1 () 3 . < >
2 3
4 () 2@
2#
7 2 3 “ 「 」 ” “ 「 」 ”
2\$ <65>
5

< 14774 ,2017. 4. 18.>
1 () 6
2 () 6 6 (9 4 10 5
)
2

3 ()
가 9 2
13 3 3 4

4 ()

5 ()

.

< 15179 ,2017. 12. 12.>

1 () 1 . , 25 2 25

2 6 .

2 (.) 5 3 • 4 ,

10 4 • 5

.

< 15573 ,2018. 4. 17.>

1 () 3 .

2 ()

.

< 16940 ,2020. 2. 4.>

6 .

< 17091 ,2020. 3. 24.> (•)

1 () . < >

2 3

4 () 4&

4* .

14 5 35 5 “ 「 」 ”

“ 「 . 」 ” .

4(<102>

5

< 17532 ,2020. 10. 20.>

6 .

< 20201 ,2024. 2. 6.>

6 .

< 21065 ,2025. 10. 1.>()

1 () . , 7

, .

1. 2026 1 2 . , 7
(가)

가. 19 4 , 23 , 29 1 1 30
. 12 2 , 19 3 , 22 29 2 ()
(가)
7

2.

2 6

7 () <242>

<243>

2 3 2, 10 , 5 1 , 2 , 9 1
, 2 , 9 2 1 , 2 , 10 1 ,
2 • 3 , 11 2 , 12 2 , 13 5 , 14 1
, 4 , 14 2 2 , 16 4 , 21 1 ,
25 1 , 3 , 4 , 2 ,
5 , 1 , 6 , 26 3 , 26 2 3 , 28
3 , 29 2 5 , 31 6 , 32 1 , 2 ,
33 1 • , 35 1 , 4 , 38 1 • 2 , 38
4 2 4 , 39 2 2 , 39 2 , 41 3
41 2 2 “ ” “ ” .
3 , 5 1 , 2 , 3 • 4 ,
9 1 , 2 , 9 2 1 , 2 , 10
1 , 3 , 11 1 4 , 12 2 • 4 , 12
2 1 , 13 1 , 2 ,

3 , 4 , 6 , 14 1
 , 2 • 3 • 5 • 6 , 14 2 1 , 15 1
 • 3 , 16 1 3 , 18 1 , 2
 2 , 4 • 5 , 6 , 7 , 8
 , 19 1 3 , 19 2 1 • 2 , 20 1 • 2 • 4 ,
 21 1 , 2 , 3 , 22 1
 , 2 , 23 1 • 2 , 24 1 , 2 • 3 , 25
 1 • , 2 , 4 , 5
 , 6 , 25 2 2 11 , 25 6 , 3 ,
 28 1 , 2 , 29 2 6 ,
 30 1 , 2 , 31 1 , 2 • 4 ,
 32 1 , 2 , 34 , 35
 1 , 2 • 3 • 5 • 6 , 36 , 37 1 , 4
 • 5 , 37 2 1 , 2 • 3 , 38 1 • 2 ,
 38 2 1 • 2 • 4 , 38 3, 39 2 , 40
 , 41 2 1 , 41 3 1 , 3
 , 42 , 43 1 • 2 , 3 49 3 • 4 “
 ” “ ” .
 12 4 , 21 3 • , 24 1 31 1 “
 ” “ ” .
 18 2 2 “ ” “ ”
 .
 29 2 6 “ ” “ ” .
 38 4 2 3 “ ” “ 가 ” .
 <244> <626>
 8

< 21156 ,2025. 12. 2.>

.

< 21438 ,2026. 3. 10.>(18)

1 () . < >
 2 3



[2026. 9. 18.] [36587 , 2026. 8. 18.,]

() 044 - 203 - 5226

1 < 2009. 4. 30.>

1 () 「 」

[2009. 4. 30.]

2 () . < 2010. 12. 9., 2013. 3. 23., 2014. 1. 14., 2014. 9. 18., 2016. 12. 5., 2024. 8. 6., 2025. 8. 19., 2025. 10. 1.>

1. “ ” , , (「 」 , 「 」 「 」 ,) [「 」 (“ ”) 2 2 가 (溶劑), ()] , , .

1 2. “ ”

10 1

2. “ ” , , .

3. “ ” , , , ((「 」 9)) , .

4. “ ” , , , (

가

)

,

.

,

,

.

5. “

”

,

,

,

(

8

)

.

6. “

”

,

[가

(爐)

]

.

7. “

”

1

6

.

8. “

”

.

,

.

9. “

”

.

(

.

.

)

.

.

10. “

”

.

(

)

.

11. “

”

.

가.

,

,

,

,

:

.

「

」

2

1

「

」

2

1

1

.

「 」 2 1
「 」 2 1 1
「 」 106
2 1 1 「 . . . 가가
」 15 1 2

[2009. 4. 30.]

3 () 2 5 2 “ ”
. < 2025. 10. 1.>
1. ()
2. (.)
3. 가

[2017. 9. 26.]

4 () 2 10 “
. ” 「 」 2 1 3

[2009. 4. 30.]

5 () 2 11 “ ”
. < 2010. 12. 9., 2013. 3. 23., 2015. 6. 15., 2016. 7. 7., 2024. 8. 6., 2025. 10. 1.>

1. : , , , , 가
2. : , , , 가
3. : , , 가 [(爐)]

[2009. 4. 30.]

6 () 3
. 「 가 」 18 2 가

가

.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

7 () 5 1 “
”

. < 2012. 5. 14., 2014. 6. 30.>

1. (7 가

)

2. ()

3. (100 20 가

)

4. 9 1 1 (

100 20 가

)

[2009. 4. 30.]

8 () 5 2 “
”

,

.

5 2 “ ”

. < 2014. 6. 30.>

1. (7 가

)

2. ()

3. (100 50

가

)

[2009. 4. 30.]

9 () 5 5

. < 2014. 9. 18., 2019. 9. 3.>

1.

가.

.

. (改質施設)

. (脱黄施設)

2. 40

5 1

.< 2011. 12. 30., 2013. 3. 23.,

2025. 10. 1.>

1. 1

2. 가 6

3. 11 2 1

4. ,
5 1

40

.< 2011. 12. 30., 2014. 9. 18.>

5 2 5

.< 2011. 12. 30., 2019. 9.

3.>

1.

2. ()

3. ,

4. 5 (,)
1 2 3 3

.< 2011. 12. 30.,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011. 12. 30.]

10 () 9 1 1 “

” 가 5 .
9 1 2 “ ”

1. ,

2. 1 「 」 3 1

[2009. 4. 30.]

11 () 9 2 “

” . < 2012. 5. 14., 2014. 6. 30.>

1. (9 4 7 가)

2. ()

3.

4. (100 20 가)

[2009. 4. 30.]

12 () 9 1

. < 2012. 5. 14., 2013. 3. 23., 2014. 9. 18., 2016. 12. 5., 2025. 10. 1.>

1. 15 2 5

· ,

가 .

2. 1

가. 가 : 가 15

· , 가 가

9 1 2 가 15

가

· 가 : 가

1

· () .

: 45

9 1

.< 2011.

12. 30., 2013. 3. 23., 2025. 10. 1.>

1. 1

2. 가 6

3. 11 2 2

4. , 9 1

.< 2011. 12. 30., 2012. 5. 14., 2013.

3. 23., 2014. 9. 18., 2016. 12. 5., 2025. 10. 1.>

1. 15 2 5

2. 1

가. 가 : 가 15
 . , 가 가 9 3
 가 15

가
 . 가 : 가
 1

. : 45

1 3 3
 . < 2011. 12. 30., 2013. 3. 23., 2025. 10. 1. >

[2009. 4. 30.]
 [2011. 12. 30.]

13 () 10 1 • 2 6
 1 . < 2019. 9. 3. >

[2009. 4. 30.]

14 () 10 3 “
 ” . < 2014. 6. 30., 2019. 9. 3. >

1. (10 7 7 가
)

2. ()

3.

4.

[2009. 4. 30.]

15 () 10 6
 2 . < 2019. 9. 3. >

“ . ”) . . (.
 “ . . ”) 10 1

. < 2013. 3. 23., 2017. 3. 27., 2025. 10. 1. >

1. 1

2. 가 6

3. 11 2 3

4. ,

[2011. 12. 30.]

16 () 11 1 “ ”

.

1. : 3

2. : 2

3. : 1

11 1

5

,

.

.

.

.< 2011. 12. 30.,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16 2() 11 2 “

”

.

1.

가.

.

. (改質施設)

. (脱黄施設)

.

.

2. :

3. :

[2010. 12. 9.]

17 () 12 1 “ ” 6

.

[2009. 4. 30.]

17 2() 12 2 1 “ ” 13

1

.

[2014. 9. 18.]

17 3(가) 12 2 1 (

“

”

)

10

가

. < 2025. 10. 1.>

1 가

.<

2025. 10. 1.>

.

[2014. 9. 18.]

17 4()

1.

2.

3.

4.

5.

6. 가

7. .

8. 1 (座)

9.

10.

11. .

12.

13.

14.

15.

16.

17.

[2014. 9. 18.]

17 5()

12 2 3

. < 2025. 10. 1.>

1.

2.

가 2

,

.< 2021. 1. 5., 2025. 10. 1.>

2

,

.<

2021. 1. 5., 2025. 10. 1.>

1

가

.< 2025. 10. 1.>

[2014. 9. 18.]

17 6() 17 3 가

1.

2.

3.

4.

5. 가

6. 1

7.

8. .

9.

10.

11.

1 ()
3

[2014. 9. 18.]

17 7() 12 3 5 “ ”

1. .

2.

[2014. 9. 18.]

17 8() 12 4 2 “ ”

1.

2. 12 3 4

3.

[2014. 9. 18.]

3

18 () 1

15 1 , ,
(油種), (.
) . < 2013. 3. 23., 2025. 10. 1.>

1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19 () <2017. 9. 26.>

17 1 3 “ ”

가 가

.< 2010. 12. 9.>

[2009. 4. 30.]

20 () 17 1 가

60

(“ ”) .

가

(“

”) . < 2013. 3. 23., 2025. 10. 1.>

1

12

(12

) , .< 2013. 3. 23., 2025. 10. 1.>

1

.< 2013. 3. 23., 2025. 10. 1.>

1.

2. , (

)

3. 가 가

4. 가

1

3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1 () 가 17 1

.

.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2 () 17 2

.

1. (가 .) :

1

2. 가 : 가 3

1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4

.

< 2009. 4. 30.>

23 () 18 1 1 .

. < 2010. 12. 9., 2013. 3. 23., 2025. 10. 1.>

1. 3 , 가

2. ()

,

18 1

“

”

.< 2014. 6. 30., 2025. 10. 1.>

1. 가

16

(“ ”)

2. . 가

3. 가

4. . 가

5. 가

2 1 3

가

가

(

.

)

.

,

16

가

.< 2014. 6. 30.>

(

.

)

,

가

가

.

18

1

2

가

가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4 (

)

18

2

1

< 2011. 12. 30., 2012. 6. 29., 2013. 3. 23., 2014. 9. 18., 2019. 3. 26., 2022. 4. 27., 2022. 7. 29., 2024. 6. 4., 2025. 6. 30., 2025. 10. 1., 2026. 7. 30.>

1. 23 1 1 : 16

2. 23 1 1 : 16

3. 23 1 1 가 : 3,800 . ,

가

24,242 (2025 12 31

20,605)

.

4. 23 1 2 : 36

5. 23 1 2 : 62,283 . , 2026 12 31

0

.

21 1

가

18

2

.< 2013. 3. 23.,

2025. 10. 1.>

18

4

가

.

가

60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5 (

)

18

1

1

「

」

(

. “ ”)

. < 2013. 3. 23., 2025. 10.

1.>

1. : 「 」 248 가 (受理) (

23 3 4

.). ,

가

「 」 248

가

15

2. : (가

23 4

)

18 1 2

3

1 2

28

1 .< 2013.

3. 23., 2021. 6. 22., 2025. 10. 1.>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6 ()

,

가

25

90 . < 2010. 12. 9., 2013. 3. 23., 2025. 10.

1.>

1. , ,

2. 가 , ,

,

3.

4.

1

.< 2013. 3. 23., 2025. 10. 1.>

1

가 27 1

.< 2025. 10. 1.>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6 2() 18 37 ,
(“ ”) .

.< 2025. 10.

1.>

[2016. 12. 5.]

27 () 19 1 “
” . < 2012. 6. 29.,

2013. 3. 23., 2013. 8. 27., 2014. 1. 14., 2014. 6. 30., 2015. 7. 24., 2016. 7. 7., 2016. 12. 5., 2017. 9.
26., 2018. 4. 24., 2019. 3. 26., 2019. 9. 3., 2021. 12. 28., 2022. 12. 30., 2025. 10. 1., 2026. 3. 17.,
2026. 8. 18.>

1. 가
(
「
」)

2. (

3. 가 가

4. 23 2 4

5.

6. 가 11845
15 1 가 (

“ ”)가 .
, 2012 7 1 2027 12 31

7. 가 2013 7 1 2027 12 31

가

8. 가
「 가 」 2 9 가

가

가. 「 2 3

. 「 . 2 5

「 2 7 4

. , 「 가 2 3 .

. 「 2 19 가

9. 가 「 가 2 2 가 .

. , 2014 1 1 2017 12 31

10. 「 가 10 11 3 가 가

가

11. 가

19 1

.< [2014. 9. 18., 2025. 10. 1.>](#)

1. 24 1

2. 1

3. 가

가

(美洲),

(

“ ”) 2027 12 31 1

2

24 1 1

.<

[2014. 9. 18., 2015. 7. 24., 2019. 9. 3., 2021. 12. 28., 2024. 8. 6., 2025. 10. 1.>](#)

19 1 가

5 28 2

.< [2014. 9. 18., 2021. 6. 22.>](#)

28 2

「

」

(移替)

.< [2014. 9. 18., 2021. 6. 22.>](#)

19 3 “ ” 「 」 가

1

.< [2010. 11. 15., 2013. 3. 23.,](#)

2014. 9. 18., 2025. 10. 1.>

1 6

• •

,

.< 2013. 3. 23., 2014. 9. 18.,

2025. 10. 1.>

[2009. 4. 30.]

27 2()

19 2 1

(告知)

. <

2013. 3. 23., 2025. 10. 1.>

1

, 가 가

.< 2013. 3. 23., 2025. 10. 1.>

1

.

1 3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8 ()

20 1

25 2 (“ ”)

. < 2012. 5. 14., 2012. 6. 29., 2013. 3. 23., 2014. 1. 14., 2014. 6. 30., 2021. 6. 22., 2025. 10.

1., 2026. 3. 17.>

1. 18 가

2. 19 •

3. 19 2

1

.< 2014. 1. 14.,

2021. 6. 22., 2025. 10. 1., 2026. 3. 17.>

1

15

.< 2021. 6. 22., 2025. 10. 1.,

2026. 3. 17.>

[2009. 4. 30.]

5

< 2009. 4. 30.>

29 ()

21

1

12

“

”

. < 2010. 12. 9.>

1.

가.

.

2.

가.

.

.

.

[2009. 4. 30.]

30 () 22 1

. < 2013. 3. 23., 2025. 10.

1.>

1.

2. . , ,

3. . .

[2009. 4. 30.]

6

31 () 26 1 “ , ,
 , 10 1 「

」 ”

. < 2010. 12. 9., 2017. 9. 26., 2026. 3. 17.>

1.

2.

2 2.

3.

4. 「 , 」

5. 「 (“ ”)

26 2 “ 5 1 ,

「 」

가 . ”

.< 2017. 9. 26.>

1. 가 5 1

2.

3. 「 」 154

4. 「 」 가 .

5.

[<2017. 9. 26.>](#)

[2009. 4. 30.]

31 2() 26 2 2 “ 5 1

, 「 」
가 . ”

. < [2017. 9. 26.>](#)

1. 가 5 1

2. 「 」 154

3. 「 」 가 .

4.

[2009. 4. 30.]

7

32 (.) 32 1 2 “
”
1

.
[2009. 4. 30.]

33 (.) 32 2 “
”
. < [2014. 6. 30., 2024. 8. 6.>](#)

1. (32 4 7 .
가)

2. ()

3. ()

4. (100 20 가)

5. 34 1 1 (100 20 가)

6. (油種)

[2009. 4. 30.]

34 (•) 32 3 •

1. • (

)

2. 30 (가

20)

32 1 •

.< 2011. 12. 30., 2013. 3. 23., 2025. 10. 1.>

1. 1

2. 가 6

3. 33 2 1 •

4. ,
32 1 •

30 (가

20)

.< 2011. 12. 30.>

1 2 3 3

.< 2011. 12. 30.,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2011. 12. 30.]

35 () 33 1 “

”

. < 2014. 6. 30.>

1. (33 3 7

가)

2. ()

3.

4.

[2009. 4. 30.]

36 () 33 2

1 .

33 2

2

• • •

33 1

.< 2011. 12. 30.>

1. 2

2. 가 6

3. 33 2 2

4. ,

[2009. 4. 30.]

[2011. 12. 30.]

37 ()

16

(1 2) . “ ” “
• ” , “ ” “ ” .

1. 32 4 • 11

2. 33 3 11

17

1. 32 4 • 12

2. 33 3 12

[2009. 4. 30.]

37 2() 33 2 “

1. •

가. •

2. :

[2010. 12. 9.]

38 () 36 • 가

5

1

가

36

20

21

“ ”

“ ” , “ ” “ ” .

[2009. 4. 30.]

39 () 37 1

3

•

.

37 1

“

”

.< 2013. 3. 23., 2014. 6. 30., 2025. 10. 1.>

1. • 가

(“ ”)

2. • 가

3. • 가

2 1

•

가

가

.

•

가

가

.

[2009. 4. 30.]

40 () 37 2

.<

2013. 3. 23., 2024. 8. 6., 2025. 10. 1.>

1. 3 2 : 16

2. 3 2 : 16

3. 3 2 : 16

4. 3 2 : 11

5. 3 2 5 3 ():

16

37 4

가

.

가

60

.< 2013. 3. 23., 2025. 10. 1.>

,

,

25 1 • 3 • 4 , 26 , 27 2

28 . 25 “ 18 1 1 ” “ 37 1
 ” , “ ” “ ” , “ 23 3 4 ” “ 39 3
 4 ” , 26 “ ,
 ” “ • ” , “ 27 1 ” “ 41
 1 ” , 27 2 “ 19 2 1 ” “ 37 7 ”
 , 28 “ 20 1 ” “ 37 7 ” .< [2010. 12. 9.>](#)
 [2009. 4. 30.]

41 () 37 7
 • 19 1 “
 ” .< [2013. 3. 23.](#), [2014. 6. 30.>](#)

1. • 가 ()
 「 」
 2. • 가

37 가
 5 40 3 .
 40 3
 「 」
 .

1 2 • ,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41 2() 37 2 1 4 “
 ” .< [2025. 10. 1.>](#)

1. •
 2. • •
 3. •
 4.
 37 2 2 “ ”
 .< [2025. 10. 1.>](#)

1.

2. 37 2 1

, ,

[2024. 8. 6.]

[41 2 41 3 <2024. 8. 6.>]

8 < 2009. 4. 30.>

41 3() , . . .

38 1

(週) (月)

. <

[2025. 10. 1.>](#)

[2014. 6. 30.]

[41 2 <2024. 8. 6.>]

42 () 38 2 “

”

.

1. 100

10

2. 1

[2012. 5. 14.]

42 2(가) 38 2 1

가

. < [2010. 12. 9.](#), [2013. 3. 23.](#), [2025.](#)

[10. 1.>](#)

1. (5 1

5 2

.

)

2. (

)

.

3.

가.

.

.

.

.

1

가

가

,

4

.

2

가

.< 2013. 3. 23., 2016. 7. 7., 2025. 10. 1.>

1. : 가 . ,

가 .

2. : 가 . ,

가

.

3. : 가

4. : 가

가. 1 가

. 가 (.)

. 「 」 106 2 1
(“ ”) 가

3 가 ,

5 .

38 2 3 가 가
가 가 가

.< 2014. 6. 30.>

「

」

12 8 16 1 5 가 가 가

.< 2014. 6. 30., 2016. 7. 6.>

5 6 가 가 ,

.< 2014. 6. 30., 2025. 10. 1.>

38 2 4 1 2 가

.< 2012. 5. 14., 2013. 3. 23., 2014. 6. 30., 2025.

10. 1.>

8 38 2 1 가

20 .< 2016. 7. 7.,

2025. 10. 1.>

1 4 가

.< 2013. 3. 23., 2014. 6. 30., 2016. 7. 7., 2025. 10. 1.>

[2009. 4. 30.]

42 3() 38 3

. < 2025. 10. 1.>

1.

2.

3.

4. (油種)

1

. < 2025. 10. 1.>

[2024. 8. 6.]

[42 3 42 5 <2024. 8. 6.>]

42 4() 38 4 1 “ 29

”

. < 2024. 8. 6.>

1. 29 39

2. 38 38 2

3. 38 2 2 가

4.

[2014. 6. 30.]

[42 6 , 42 4 42 6 <2024. 8. 6.>]

42 5(•) 39 1

•

. < 2015.

7. 24.>

1. 가 • • •

•

2. 가 •

가

3. 가 • • •

4. 가 (着色劑) • (識別劑)

()

5. • •

6. 가 • • •

가 가

[2012. 5. 14.]

[42 3 , 42 5 42 7 <2024. 8. 6.>]

42 6() 39 1 2 “ (使用公差
) ” 「 」 17 . < 2010.
[12. 9., 2012. 5. 14., 2014. 12. 30.>](#)

[2009. 4. 30.]

[42 4 , 42 6 42 4 <2024. 8. 6.>]

42 7(•) 39 1 8 3 “
 • ” 「 」 2 1 3
 () . < 2015. 7.
[24.>](#)

[2012. 5. 14.]

[42 5 <2024. 8. 6.>]

43 () 39 1 10 “
 ” . < 2012. 5. 14., 2014. 6. 30., 2015.
[7. 24., 2024. 8. 6.>](#)

1. 2

2. 13 36 1

(가)

3. 가

가

4. 가 .

•

5. <[2012. 5. 14.](#)>

6. 가 (爐)

7.

(「 」 25 가

)

8. 가

9. 가

10.

가. 「

」

가 .

. 가

11. . 가 「 」 2 2

, . . 1 4

, 1 4

13 . 14 . 34 35

.< 2013. 3. 23., 2025. 10. 1.>

1

.

.< 2013. 3. 23., 2025. 10. 1.>

[2009. 4. 30.]

44 () 39 2 3 “

”

(「 」

9

) .

1.

2.

3.

4.

5.

6. 가

7.

39 2 3

“

”

1 4

6

.

39 2 4

“

”

.

1. 가 16 2

2. . . .

가

가

가

[2009. 4. 30.]

44 2(•) 42 •
 • •
 . < 2025. 10. 1.>

- 1.
- 2.
- [2019. 9. 3.]

45 (•) 43 1
 • . < 2017. 9. 26., 2025. 10. 1.>

1. 9 1
2. 9 2
3. 11 1
4. 13 2
5. <2019. 9. 3.>
 <2014. 6. 30.>
 <2014. 6. 30.>

43 2

. < 2010. 12. 9., 2012. 5. 14., 2013. 3. 23., 2013. 8. 27., 2015. 7. 24., 2017. 9. 26., 2019. 9. 3.,
 2024. 8. 6., 2025. 10. 1., 2026. 3. 17.>

1. 5 1 (11 1)
2. 5 2 () , ,
 5 5
3. 5 5
4. 9 1 2 (11 1)
5. 9 3

5 2. 9 2 1 ,

5 3. 9 2 2 ,

6. 10 1 3
 (11 1)

7. 10 6

8. 12 2 , , .
- 8 2. 14 1 3
9. 25 2
10. 29 1 가
11. 31 4
12. 32 1 2 . (
- 32 4 11 1)
13. . 32 3
14. 32 4 12 2 .
- , .
- 14 2. 35 1 3
15. 38 1 2 (, ,)
16. 38 1 2 (試料) ()
- 16 2. 38 3
17. , , , 39 1 1 4 , 8
- 10 (43 1 3 . 4)
18. 39 2 , 3 5
19. 41 2
20. 41 3 1
21. 41 3 3
- 43 2 .<

[2012. 5. 14., 2013. 3. 23., 2015. 7. 24., 2025. 10. 1.>](#)

1. 17 1
2. 36
3. 38 1 ()
4. <2026. 3. 17.>
- 43 3 가 가
- 30 1 1 4

.< 2012. 5. 14., 2013. 3. 23., 2025. 10. 1.>

43 2 38 1 2

.< 2012. 5. 14., 2013. 3. 23., 2025. 10. 1.>

1. , , , , 「
」
() :

2. () : ,
가

3. :
. . . 43 2

.< 2010. 12. 9., 2012. 5. 14., 2015. 7. 24., 2017. 9. 26., 2019. 9. 3.>

1. 10 1 , ,

2. 10 2

3. 10 3 , ,

4. () 10
6

5. 11 1 , ,

6. 12 2 ,
.

7. 33 2

8. 38 1 (

9. ()
39 1 1 4 , 8 10 (43
1 3 . 4)

. . . 가

.< 2012. 5. 14.>

[2009. 4. 30.]

[2017. 9. 26.]

46 () 45

가

. < 2013. 3. 23., 2014. 6. 30., 2025. 10. 1.>

.< 2013. 3. 23., 2019. 9. 3., 2025. 10. 1.>

[2009. 4. 30.]

46 2() , . (.)

가 「 」 19
가 . < 2017. 9. 26., 2025.

10. 1.>

1. 5

2. 9

2 2. 9 2

3. 10

4. 11 .

5. 18 .

6. 25

7. 32 .

8. 33

9. 37 .

[2017. 3. 27.]

[46 2 46 3 <2017. 3. 27.>]

46 3() 17 3 가

2015 1 1 3 (3 1 1)

. < 2020. 3. 3., 2025. 10. 1.>

2

(2 1 1)

.< 2014. 12. 9., 2025. 3. 12., 2025. 10. 1.>

1. 23 1 5 . : 2015 1 1

2. 24 1 : 2015 1 1

3. 39 1 3 : 2015 1 1
 4. 40 1 : 2015 1 1
 5. <2025. 3. 12.>
 [2013. 12. 30.]
 [46 2 <2017. 3. 27.>]

9

47 (•) 49 1 2
 6 . < 2017. 9. 26.>
 49 1 1 , 2 , 4 6 2
 • . ,
 가 • .< 2017. 9. 26., 2019. 9. 3., 2025. 10. 1.>
 1. : •
 2. (), :
 • • •
 3. : • •
 49 1 3 7 •
 • • • ,
 가 • • •
 .< 2017. 9. 26.>
 <2017. 9. 26.>
 [2009. 4. 30.]

< 18796 ,2005. 4. 22.>
 1 () 2005 4 23 . , 12 1 2 가
 2 2 가 2006 7 1 , 32 41 ,
 43 • 45 46 •
 2006 1 1 , 40 1 4 2009 1
 1 .
 2 () 24 1 1 2008 10 17 가 .
 27 1 3 7 2008 2 29 가 . < 2006.
 2. 7.>
 3 () 11 1
 1

1 1 12 1 1

4 () .
1 15 “ ” “ 「 」 ” .

2 6 .
6. 「 」
가 .
9 1 “ ” “ 「 」 ” , 23
2 1 1 2 “ ” “ 「 」 ” .

48 “ 34 4 ” “ 「 」 45 4 ” , “
28 1 ” “ 「 」
38 1 ” .

3 1 “ 26 2 ” “ 「 」
2 10 ” , “ 26 3 4 ” “ 「 」 29 5 ” , 2 “ 26 2 ”
“ 「 」 2 10 ” , “
26 3 4 ” “ 「 」 29 5 ” , 15
3 6 “ ” “ 「 」 ” .

10 2 9 “ ” “ 「 」 ” .
「 . . . 가가

」 .
22 1 2 “ 「 」 2 8 9 ” “ 「 」 2 7 8 ” .
「 」 .
37 2 “ 「 」 ” “ 「 」 ” .

24 .
24. 「 」

30 4 “ ” “ 「 」 ” , 43
3 6 “ ” “ 「 」 ” .

3 1 1 “ ” “ 「 」 ” .

3 1 2 “ ” “ 「
」 ” , “ 4 1 ” “ 「
」 5 1 ” .

3 4 “ 26 ” “ 「 」 29 ”

「
」
22 1 2 “ 「 」 ” “ 「 」 ” ,
22 2 1 2 “ 「 」 ” “ 「 」 ”

「
」
132 4 9 194 15 4 9 “ 「 」 ” “ 「
」 ” .

1^
17 7 “ 2 8 10 ” “ 「
」 2 7 9 ” .

1& 「
」
19 3 7 “ 「 」 16 ” “ 「
16 ” , 8 “ 「 」 2 8 ” “ 「
」 2 7 ” , 1 7 가 (2) (2) “ 「
26 2 ” “ 「 」 2 10 ” ,
(2) “ 「 」 ” “ 「 」 ” ,
“ 「 」 ” “ 「 」 ” .

1*
39 4 2 1 “ ” “ 「 」 ” ,
9 7 “ ” “ 「 」 ” .
1(. . 가 .
1 1 (6) “ 4 . 8 9 ” “ 「
」 5 . 9 10 ” .

2)

22

7

“

34

1

”

“ 「

」

45

1

”

.

5 (

)

「

」

.

< 18939 ,2005. 7. 8.>

()

.

(

)

24

1

6

.

< 19320 ,2006. 2. 7.>

()

.

,

40

1

4

2009 1

1

.

(

)

24

1

1

.

2

3

,

40

1

1

5

「

」

241

.

,

「

」

244

1

.

< 20091 ,2007. 6. 15.>

.

< 20244 ,2007. 9. 6.> ()

1 ()

.

<

>

2

5

6 (

)

.

43

1

6

“ 「

」

26

”

“ 「

」

25

”

.

1&

7

< 20458 ,2007. 12. 20.>

1 () 2008 1 1 .

2 () .

1 7 .

ㄱ

ㄴ 24 2

< 20678 ,2008. 2. 29.> ()

1 () . < >

2 6

7 () 3%

3^

2 3 • 4 • 9 • 10 , 5 6 , 9 4 ,
12 1 2 • 2 2 • 3 , 16 2 , 20 2 , 22 2 ,
23 2 4 , 24 3 , 25 3 , 27 1 1 • 2 , 34 3 ,
39 2 3 , 40 1 6 • 2 , 46 1 • 2 , 47 4
“ ” “ ” .

2 7 , 5 6 , 6 , 16 2 , 18 1 • 2 , 20 1
• 3 • 4 , 21 , 23 1 2 • 2 3 •
5 , 24 1 1 • 2 , 25 1 1 • 4 , 26 1
• 4 2 4 , 27 1 • 2
• 5 • 6 4 , 28 1 3 , 30 ,
39 2 2 , 41 1 • 4 , 43 2 • 3
• 4 , 45 1 • 3 • 4 ,
46 1 • 2 , 47 2 • 3 “ ” “ ”
” .

3& <86>

< 20840 ,2008. 6. 20.>

2008 6 22 .

< 21214 ,2008. 12. 31.>()

1 () . < >

2 4

5 () <115>

<116>

1 1

“ ” “ ”

, 2

“ ” “ ”

.

<117> <175>

< 21223 ,2008. 12. 31.>

1 () .

2 () 24 1 1 2011 10 17 가

.

3 () 24 1 1

.

< 21462 ,2009. 4. 30.>

1 () 2009 5 1 .

2 () 2 1

,

.

2 1

,

.

2 1

,

.

3 () 2 1 .

,

2 1 .

.

4 () . .

3 1

“ 「

」 29 5

” “ 「

」 29 2 6 ” .

22 7
7. 「 」 25 2

< 22493 ,2010. 11. 15.>()
1 () 2010 11 18 .
2 3
4 4 () <61>
<62>
27 4 “ ” “ ” .
<63> <115>
5

< 22518 ,2010. 12. 9.>
1 () .
2 () 23 2 2 4
「 」 241 . , 「
」 244 1
3 () 2 1
2
4 ()
2 1 2

< 22913 ,2011. 5. 3.>

< 23356 ,2011. 12. 8.>()
1 () 2011 12 8 . < >
2 () 3)

3!

2 1 2) 1. 2 2) 1. “ ” “

”

3@ <54>

< 23455 ,2011. 12. 30.>

1 () .

2 () 24 1 1 2014 12 31 가

.

3 () 24 1 1 2011

10 18

4 () <2014. 1. 14.>

6 2 1)

.

< 23782 ,2012. 5. 14.>

1 () 2012 5 15 .

2 ()

2 1 () 2 (

)

3 ()

6 2 3) • 3)

.

< 23906 ,2012. 6. 29.>

1 () 2012 7 1 .

2 () 24 1 1

.

< 24442 ,2013. 3. 23.> ()

1 () . < >

2 11

12 () 3*

3(

2 3 , 4 , 9 • , 10 , 5 9 ,
9 5 , 12 1 2 , 3 2 , 4 , 16 2 , 20
2 , 22 2 , 23 2 4 , 24 3 , 25 3 , 27 1 1
• 2 , 34 4 , 39 2 3 , 40 1 4 , 2 , 42
2 3 1 , 2 , 6 , 45 7 ,
46 1 • 2 3 “ ” “ ”

2 7 , 5 9 , 6 , 9 2 , 12 2
, 15 2 , 16 2 , 18 1 • 2 , 20 1 ,
20 3 , 4 , 21 • , 23 1 2 •
2 3 , 5 , 24 1 1 , 2 , 25 1 1 ,
4 , 26 1 , 4 , 2 4 ,
27 1 , 2 • 4 • 5 , 4 • 5 , 27
2 1 • 2 • 4 , 28 1 , 2 • 3 , 30 ,
34 2 , 39 2 2 , 41 1 ,
4 , 42 2 1 , 3 , 5 , 43 2 ,
3 , 45 1 , 2 , 4
, 5 , 6 , 7 , 2 ,
46 1 • 2 , 46 2 1 • 3 , 47 1 ,
4 , 1 1 • 2 4 4 “ ”
“ ” .

4) <92>

< 24695 ,2013. 8. 27.>

1 () .

2 () 23 2 2 4

「 」 241
. , 「 」 244 1

< 24697 ,2013. 8. 27.>()

1 () 2013 8 29 . < >

2 11

12 () 2!

2@

27 1 6 “ 「 」 373

” “ 11845

15 1 가 (” ”

) ”

27 1 7 “ 「 」 373

” “ ”

2# 3%

13

< 25050 ,2013. 12. 30.> ()

2014 1 1 . < >

< 25078 ,2014. 1. 14.>

1 () .

2 ()

6

6

< 25425 ,2014. 6. 30.>

1 () . , 42 2 5 7

42 6 2014 7 22 .

2 () 6 1 , 2 가 3), 2 3),

2 3), 2 3), 2 2

.

「 가 」 2 가

6 2

「 가 」 2 가 6

2

3 () 가
2 가 1) “ (가) ” “ 가 ” .

< 25611 ,2014. 9. 18.>

1 () 2014 9 19 . , 24 1 1 , 27
2 3 2015 1 1 .
2 () 24 1 1 , 27 2 3
2015 1 1 .

< 25840 ,2014. 12. 9.>()

1 () 2015 1 1 .
2 16

< 25923 ,2014. 12. 30.>()

1 () 2015 1 1 . < >
2 7
8 () .
42 4 “ 「 」 7
” “ 「 」 17 ” .
9

< 26316 ,2015. 6. 15.>(. .)

1 () 2015 7 29 . < >
2
3 ()

5 3 “ 「 . . 」 2 1 ”
“ 「 . . 」 2 1 ” .

< 26437 ,2015. 7. 24.>

2015 7 29 . , 27 1 6 • 7 , 3
42 3 4 • 5 .

< 27323 ,2016. 7. 6.>(
)

1 () 2016 7 7 .

2

3 ()

42 2 6 「 」 “ ” 「
」 ” .

1^

4

< 27325 ,2016. 7. 7.>

1 () . , 3 1 3

2 () 27 1 6 2016 7 1
가

27 1 7 2016 7 1 가

3 () 3 1

< 27661 ,2016. 12. 5.>

. , 26 2 2017 1 1 ,
2 3 4 2017 7 1 .

< 27960 ,2017. 3. 27.>()
2017 3 30 . < >

< 28342 ,2017. 9. 26.>
 . , 3 , 31 , 31 2, 45 4 , 46 2
6 2 2017 10 19 , 45 1 8
2018 7 1 .

< 28818 ,2018. 4. 24.>
 .

< 28845 ,2018. 4. 30.>()
1 () 2018 5 1 .
2 3
4 ()
 .
2 1 가 2 “ ” “ ” .

< 29658 ,2019. 3. 26.>
1 () 2019 4 1 .
2 (가) 24 1 3
「 」 241 . , 「
」 244 1
 .
3 (가) 27 1 8 2019
1 1 가
(「 가 」 2 3
) .

< 30069 ,2019. 9. 3.>

1 ()

2 () 27 3 2019 1 1

< 30509 ,2020. 3. 3.> (144)

< 31380 ,2021. 1. 5.> (473)
 . < >

< 31810 ,2021. 6. 22.>
 2021 7 1

< 32266 ,2021. 12. 28.>
 1 ()
 2 () 27 1 10
 2021 1 1 가

< 32606 ,2022. 4. 27.>
 1 () 2022 5 1
 2 () 24 1 5
 2022 7 31

< 32828 ,2022. 7. 29.>
 1 ()
 2 () 24 1 5
 2022 12 31

< 33185 ,2022. 12. 30.>

.

< 34544 ,2024. 6. 4.>

1 () 2024 7 1 .

2 (가) 24 1 3

「 」 241 1 가 .

, 「 」 244 1

가 .

< 34807 ,2024. 8. 6.>

2024 8 7 .

< 35382 ,2025. 3. 12.> (40
)

.

< 35615 ,2025. 6. 30.>

1 () 2025 7 1 .

2 (가) 24 1 3

「 」 241 .

24 1 3 「 」 244

1

.

< 35709 ,2025. 8. 19.>

.

< 35803 ,2025. 10. 1.>()

1 () . , 6

2 5

6 () 4#

4\$

2 3 . , 4 , 8 , 9 . ,
10 , 11 , 3 2 , 5 3 , 9 5 , 12 1
2 , 3 2 , 4 , 16 2 , 20 2 , 22 2 ,
23 2 5 , 24 1 3 , 3 , 25 3 , 26
2 2 , 27 1 1 • 2 , 34 4 , 39 2 3 , 40 1 5 ,
2 , 41 3, 42 2 3 1 , 2 ,
10 , 42 3 2 , 44 2 , 45 7 , 46
1 2 “ ” “ ” .
2 7 , 5 3 , 6 , 9 2 , 12 2
, 15 2 , 16 2 , 17 3 1 • 2 , 17 5
1 , 2 • 3 , 4 , 18 1 • 2 ,
20 1 , 3 , 4 , 21 • , 23
1 2 , 2 4 , 5 , 24 2 , 25 1 1 ,
4 , 26 1 , 4 , 2 4 ,
27 1 2 • 4 • 5 , 2 , 3 ,
3 • 6 • 7 , 27 2 1 • 2 • 4 , 28 1 ,
2 4 , 30 , 34 2 , 39
2 2 , 41 4 , 41 2 1 4 , 2 2 , 41 3, 42
2 1 , 3 , 7 9 ,
42 3 1 , 43 2 , 3 , 44 2
, 45 1 , 4 , 5
, 6 , 7 , 2 , 46 1 • 2 ,
46 2 , 46 3 1 , 2 47 2
“ ” “ ” .

4% <101>

< 36182 ,2026. 3. 17.>

1 () 2026 3 20 .

2 (.) 27 1 11
가 .

3 () .
8 1 1 “ ” “ ” ,
, , 3 2
, 4 “ 1 , 3 3 2 ” “ 1 3 ” ,
2 3 “ . . ” “
 . “ ” .
 . 「 」 19 .

< 36557 ,2026. 7. 30.>

1 () .
2 () 24 1 5
2026 12 31 .

< 36587 ,2026. 8. 18.>(

)
1 () 2026 9 18 .
2 () 2#
2\$.
27 1 8 .
「 . . 」 2 5 「
」 2 7 4
2% 4\$
3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

(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1. 석유판매업

구분	석유판매업의 종류	취급 석유제품
등록 대상	일반대리점	○석유제품(용제·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는 제외한다)
	용제대리점	○용 제
	주유소	○휘발유·등유·경유
	용제판매소	○용 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생연료유
신고 대상	일반판매소	○등유·경유
	항공유판매업	○항공유
	특수판매소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석유제품

※비고: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 판매업에서 제외한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구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취급 석유대체연료
등록 대상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나) 수송장비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제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나) 수송장비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 주유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서울특별시	그 밖의 지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나) 주유기	1대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다) 공중화장실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한정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의 거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2)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	------------------------------------

라. 용제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저장소를 말한다) 또는 취급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제4호의 취급소를 말한다)일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마.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요건 :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저장시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 수송장비	1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나) 수송장비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이거나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의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제1호의 거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2.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저장시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일반 석유		바이오연료를 포함하는 석유	
품목번호 (HSK)	품명	품목번호 (HSK)	품명
2709.00-1010 ~2000	원유	2710.20-1010	자동차휘발유
2710.12-1000	자동차휘발유	2710.20-1020	항공휘발유
2710.12-2000	항공휘발유	2710.20-9110	제트연료유
2710.19-1010	제트연료유	2710.20-1040	나프타
2710.12-4000	나프타	2710.20-1050	천연휘발유(NGL)
2710.12-5000	천연휘발유(NGL)	2710.20-1090	그 밖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페트롤리움벤젠은 제외한다)
2710.12-9000	기타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페트롤리움벤젠은 제외한다)	2710.20-9210	등유
2710.19-2010	등유	2710.20-9220	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 연료유
2710.19-2020	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 연료유	2710.20-9290	그 밖의 등유 및 그 조제품
2710.19-2090	그 밖의 등유 및 그 조제품	2710.20-9300	경유
2710.19-3000	경유	2710.20-9410	경질중유(B-A유)
2710.19-4010	경질중유(B-A유)	2710.20-9420	중유(B-B유)
2710.19-4020	중유(B-B유)	2710.20-9430	병커씨유(B-C유)
2710.19-4030	병커씨유(B-C유)	2710.20-9490	그 밖의 중유
2710.19-4090	그 밖의 중유		
2711.11-0000	천연가스(액화한 것만 해당한다)		
2711.19-0000	그 밖의 액화석유가스		
2711.21-0000	천연가스(가스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2711.29-0000	그 밖의 가스상태 탄화수소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품목번호(HSK)	품명
2710.19-9000 3826.00-0000	바이오디젤
1516.20-2090	바이오중유
2207.10-9090 2207.20-0000 2710.19-1090 3826.00-0000	바이오에탄올
2710.19-4090	유화연료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목번호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보고 대상자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보고내용	보고 방법	보고 기한
1. 석유정제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동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내수매출단가 = $\frac{\text{내수매출액}}{\text{내수판매량}}$]	전자 보고	매주 목요일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 판매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동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A·B·C중유, 황함량별) 마. 부생연료유(1호, 2호)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대리점(일반·용제), 판매소(일반·용제·부생연료유)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내수매출단가 = $\frac{\text{내수매출액}}{\text{내수판매량}}$]	전자 보고	매월 23일
3.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동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A·B·C 중유, 황함량별) 마. 용제(1호) 바. 부생연료유(1호, 2호)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판매소(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매출단가 = $\frac{\text{매출액}}{\text{판매량}}$]	전자 보고	매월 23일
4. 주유소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동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1) 석유제품 종류별 정상 판매가격 2)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격	전자 보고 또는 서면	판매 가격 결정 또는 가

			보고	변경 후 24 시간 이내
--	--	--	----	------------------------

비고

1. 보고대상자 중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업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2. 보고대상자 중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3.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부가가치통신망(VAN),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며, 서면보고에는 Fax 또는 우편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
4. 석유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농업용 면세유의 판매가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일괄 수집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6. 7. 7.>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공개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공개내용	공개 시기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석유정제업자가 지난주에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내 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석유 정제업자의 직영 사업장과 석 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 매한 물량은 제외한다)	매주 금요일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제42조의 2제3항제1호 단서에 해 당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text{평균 판매가격} = \frac{\text{전체 내수매출액}}{\text{전체 내수판매량}}$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 균 판매가격 및 석유수출 입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석유정제업자가 지난달에 대리 점(일반·용제), 주유소, 판매소 (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 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석유수출입업자가 지난달에 대 리점(일반·용제), 주유소, 판매 소(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 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매월 26일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 매가격 및 석유수출입업 자별 평균 판매가격(제42 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만 해당한다)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일반대리점이 지난달에 일반대 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석 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 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매월 26일
주유소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주유소가 전일에 주유소 및 석 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 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 량의 평균 판매가격	매일
주유소별 판매가격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 및 농 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수시

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공개방법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인터넷(www.opinet.co.kr 등), 모바일 등 전자매체 및 간
행물,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38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중 이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가
------	----	--------	---

	법조문	등록대상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750만원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경고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경고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경고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경고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 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 우		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75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4) 법 제38조의 2제1항을 위반 하여 석유제품 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보 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5) 법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 정제원료의 사용 내역을 보고 하 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 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 서류로 확인 되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경고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경고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제2 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 시·휴업 및 폐 업의 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경 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 1항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 지 않은 경 우 (1) 주 단위 보 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 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1) 명백한 오 기 또는 계 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 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 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 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 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 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200만원 750만원 경고 경고 200만원 750만원	350만원 1천300만원 200만원 750만원 1천300만원 1천3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350만원 1천3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4) 법 제38조의	법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49조 제1항 제6호				
---	--------------	--	--	--	--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경고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우 (2) 그 밖의 경우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	--	-------	------	------	------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금액															
		일반 대리점 · 용제 대리점				주유소 · 용제 판매소 · 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 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4호																

(1) 주 단 위 보고 의 경우	경고	15 0 만원	20 0 만원	25 0 만원	경고	50 만원	10 0 만원	15 0 만원	경고	15 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	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2) 그 밖 의 보고 의 경우	경고	50 0 만원	75 0 만원	1천 만원	경고	20 0 만원	40 0 만원	60 0 만원	경고	50 0 만원	750 만원	1천만 원	경고	50 만원	10 0 만원	150 만원
나) 거짓으 로 보고 한 경우																
(1) 명백 한 오기 또는 계 산상 오 류가 중 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 위 보 고 의 경 우	경고	15 0 만원	20 0 만원	25 0 만원	경고	50 만원	10 0 만원	15 0 만원	경고	15 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	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나) 그 밖 보 고 의 경 우	경고	50 0 만원	75 0 만원	1천 만원	경고	20 0 만원	40 0 만원	60 0 만원	경고	50 0 만원	750 만원	1천만 원	경고	50 만원	10 0 만원	150 만원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 위 보 고 의 경 우	15 0 만원	20 0 만원	25 0 만원	25 0 만원	50 만원	10 0 만원	15 0 만원	15 0 만원	15 0 만원	20 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50 만원
(나) 그 밖 보 고 의 경 우	50 0 만원	75 0 만원	1천 만원	1천 만원	20 0 만원	40 0 만원	60 0 만원	60 0 만원	50 0 만원	75 0 만원	1천만 원	1천만 원	50 만원	10 0 만원	15 0 만원	150 만원
4) 법 제38 조의 2 제 1 항을 위반 하여 석유	법 제49 조 제1항	50 0 만원	75 0 만원	1 천 만원	1 천 만원	10 0 만원	15 0 만원	20 0 만원	20 0 만원	50 0 만원	75 0 만원	1천 만원	1천만 원			

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6호																	
--------------------------------	-----	--	--	--	--	--	--	--	--	--	--	--	--	--	--	--	--	--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 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	6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법 제32조 제2항 및 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 위 보 고 의 경 우		20 0 만 원	35 0 만 원	50 0 만 원	50 0 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5 0 만 원	25 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150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75 만 원	75 만 원
(2) 그 밖 의 보 고 의 경 우		75 0 만 원	1천 30 0만 원	2 천 만 원	2 천 만 원	50 0 만 원	75 0 만 원	1 천 만 원	1 천 만 원	20 0 만 원	400 만 원	600 만 원	600 만 원	10 0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00 만 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오 산상 류가 중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 위 보 고 의 경 우		경 고	20 0 만 원	35 0 만 원	50 0 만 원	경 고	15 0 만 원	20 0 만 원	25 0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경 고	25 만 원	50 만 원	75 만 원
(나) 그 밖 의 보 고 의 경 우		경 고	75 0 만 원	1 천 30 0만 원	2 천 만 원	경 고	50 0 만 원	75 0 만 원	1 천 만 원	경 고	200 만 원	400 만 원	600 만 원	경 고	10 0 만 원	15 0 만 원	200 만 원
(2) 그 밖 의 경 우																	
(가) 주 단 위 보 고 의 경 우		20 0 만 원	35 0 만 원	50 0 만 원	50 0 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5 0 만 원	25 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150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75 만 원	75 만 원
(나) 그 밖 의 경 우		75 0 만 원	1천 30 0만 원	2 천 만 원	2 천 만 원	50 0 만 원	75 0 만 원	1 천 만 원	1 천 만 원	20 0 만 원	400 만 원	600 만 원	600 만 원	10 0만 원	15 0 만 원	20 0 만 원	200 만 원

보 고 의 우		만 원	0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원	만 원	만 원
------------------	--	--------	---------	--------	--------	--------	--------	--------	--------	--------	--	--	--	---	--------	--------

바. 석유비축대행업자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150만원 500만원	200만원 750만원	250만원 1천만원	250만원 1천만원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보 고 의 경 우 (나) 그 밖 의 보 고 의 경 우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 위 보 고 의 경 우 (나) 그 밖 의 보 고 의 경 우	경고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사. 주요 석유소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금액							
		제42조제1호에 따른 용제소비자				제42조제2호에 따른 석유소비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 위 보 고 의 경 우 (2) 그 밖 의 보 고 의 경 우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위보고경우	경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경고	25만원	50만원	75만원	
(나) 그 밖의 보고경우	경고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경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위보고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나) 그 밖의 보고경우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아.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 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법 제49조 제1항제2호	3백만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자.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용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				
		1백리터 미만	1백리터 이상 4백리터 미만	4백리터 이상 1킬로리터 미만	1킬로리터 이상 20킬 로리터 미 만	20킬로리터 이상
1)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법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량은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

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차. 법 제4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주유소				일반판매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의 2제3항 및 제5항을 위 반한 경우 가)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 우 나) 판매가격 을 표시하 지 않은 경우 다) 표시방법 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5호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원	1천만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원
		경고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원	경고	100만 원	300만 원	500만원
		경고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경고	50만원	100만 원	300만원



[2026. 9. 18.] [54 , 2026. 8. 27.,]

() 044 - 203 - 5226

1 < 2009. 5. 1.>

1 () 「 」

[2009. 5. 1.]

2 () 「 」 (“ ”) 2

3 4 “ ” (面)

(週)

「 」 (“ ”) 25 2

(“ ”) . <

2025. 10. 1.>

[2016. 12. 26.]

[2 2 2 <2016. 12. 26.>]

2 2() 2 3 , 4 9 “

” 5

. < 2023. 4.

21., 2024. 8. 7., 2025. 10. 1.>

1. (「 」 2 1 「 」 2 1

1

, 「 」 70 7 「 」 2 22 가

「

」 79 2 1 2

)

2.

가. 2 3 :

. 2 4 :

2 4 (「 」

7 10) (1

) .< 2015. 7. 29., 2023. 4. 21.>

[2009. 5. 1.]

[2 <2016. 12. 26.>]

2 3() 2 3 2 “ ”

. < [2025. 10. 1., 2026. 8. 27.>](#)

1. 「 」 4 2 14 3

2. 「 . . 」 2 2

3.

[2024. 8. 7.]

3 () 2 10 “ ” ,
가 가 , . .

가 (

) . < [2013. 3. 23., 2016. 12. 26., 2025. 10. 1.>](#)

[2009. 5. 1.]

[2014. 8. 12.]

3 2() 2 8 “

”

,

,

,

,

,

,

,

,

가 , ,

. < [2025. 10. 1.>](#)

2 9 “

”

,

,

, 가 . < [2025. 10. 1.>](#)

2 10 “

”

. <

[2025. 10. 1.>](#)

[2024. 8. 7.]

[3 2 3 3 <2024. 8. 7.>]

3 3(.) 2 11 1) “

”

「

.

.

.

가가

」

2 45

4 1

. <

[2025. 10. 1.>](#)

[2014. 8. 12.]

[3 2 , 3 3 <2024. 8. 7.>]

2

4 () 5 1
 1 ()
 () . < 2016.
 12. 26.>

5 1 7
 30 2

.< 2014. 8. 12.>
 1 2 「 」 36 1
 (1
 , 2 7 2)

.< 2010. 12. 16.>

1.
)
 2. ()
 3. 5 (,)
 1 2

.< 2013. 3. 23., 2025. 10. 1.>

5
 2 2 ()

.< 2013. 3. 23., 2025. 10. 1.>

6 2 3

[2009. 5. 1.]

5 () 5 2
 1 ()
 ()

5 2 8 2
 30 2

.< 2014. 8. 12.>
 1 2 「 」 36 1
 (1

, 2 8 2 2)

. < [2010. 12. 16.](#) >

1

.

1. (,)

2. 5 (,)

1

3

2

4

(

.

.

) (“ ”) (

)

2

5

(. .) (“ ”)

.

[2009. 5. 1.]

6 () 9 5
가 1

. < [2011. 12. 30.](#) >

1. 「 」 6 1 가 (

)

2. 「 가 」 3 3 가 가

3. 「 가 」 2 1 2 3

1

가

17

2

(“ ”)

.

[2009. 5. 1.]

[2010. 12. 16.]

7 () 9 5

가 (加減

) . < [2010. 12. 16.](#), [2011. 12. 30.](#) >

1. (「 , 」)

2. , 20
(“ ”)

9 5 가
가 .< 2011. 12. 30.>
[2009. 5. 1.]

8 () 9 1
30 3
()
.

1.
2. ()
1 「 」 36 1
() .

< 2010. 12. 16.>

1 1 .
1. ()
2. 5 ()

<2010. 12. 16.>

7 1 .
“ 9 5 ” “ 12 4 ” .< 2011. 12. 30.>
1
.

“ . ”) .< 2013. 3. 23., 2017. 10. 19.>

6 .
3 2
. < 2013. 3. 23., 2017. 10. 19.>

7 3 3

[2009. 5. 1.]

9 () 9 2
11 30 4

< 2014. 8. 12.>

1 「 36 1
(11 2)

.< 2010. 12. 16.>

1 .

.< 2013. 3. 23., 2017. 10. 19.>

3 .

(

)

.< 2013. 3. 23., 2017. 10. 19.>

4

.

[2009. 5. 1.]

9 2() 12 4
가 1

.

가

,

. < 2011. 12. 30.>

1. 「 」 6 1 가 (

)

2. 「 가 」 3 3 가 가

3. <2015. 7. 29.>

가

9 2

가

가

1

< 2014. 9. 22.>

1.

2. 100 20 가

1

2

가

.<

2014. 9. 22.>

[2010. 12. 16.]

10 () 12 1 2 “

”

(

) .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11 () 9 2 1

5 (

) ()

.

1.

2. . (가

)

9 2 2 “ ”

.< 2025. 10. 1.>

1. (9 2 3 7

가)

2. ()

3.

4.

9 2 2 2

30 5 2

.

1 3

5 3

()

5 4

.

[2017. 10. 19.]

12 () 10 1

6 (.

) () (

) . , 2 1 가 2

가

.<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1. (

)

2. , 가

(, “ ”)

3. (가

4. (가

10 1 7
() ,
· · (.)

· , 「 」 4 3
(“ ”)

· .< 2013. 3. 23., 2014. 8. 12., 2025. 10. 1.>

1. (가)

2.

3.

4. · · 2 1
가

10 1 8
() ()
() , · ·
· ,
·< 2014. 8. 12.>

1. ()

2. 7

3. 2 가 가

10 1 8
9 () ()
() ()
·< 2010. 12. 16., 2014. 8. 12.>

1. (, (油種別)
5)

2. ()

1 4 , , ·

· 「 」 36 1 ,
() .< 2010.

12. 16., 2017. 10. 19.>

10 1
10 ()

.<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1. (가
)

2. (가
)

10 2 ,
11 (. .)
가
가
.
.
.
.
.
.
.<

2014. 8. 12.>

1. 「 」 6

16 2

2. 「 」 7

16 2

3. 「 」 8

16 2

4. 「 」 9

16 2

5. 「 」 14

6. 「 」 16 2

, . . 2 . 3 . 5

7 12
(.) 13 (.

.) (“ ”)
, 14 (.)

15 (.)

(“ ”) .< 2010. 12. 16., 2017. 10. 19.>

1 . 4 6

.< 2013. 3. 23., 2017. 10. 19.,

2025. 10. 1.>

9 . (.
 .) .<

2010. 12. 16., 2013. 3. 23., 2017. 10. 19., 2025. 10. 1.>

10 12 (.
 . .) 16 (.< 2010. 12. 16., 2017. 10. 19.>
) .< 2010. 12. 16., 2017. 10. 19.>
 8 (.) 11 (.
 . . .) (“
 ”) 가 가 가

. .< 2010. 12. 16., 2013. 3. 23., 2017. 10. 19., 2025. 10. 1.>
 , . . 42 2 5
 45 4 8 ㄱ
 ㄴ (“ ”)
 . ,
 . . .
 , . 가 .

< 2012. 5. 14.,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13 () 10 3
 14 30
 17 ()
 , . . (.
 . . .
) . <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1 , , . .
 ㄱ ㄴ 36 1
 (14 2) .< 2010. 12.
 16., 2017. 10. 19.>

, . 1 2
 ,
 (.< 2017. 10. 19.>

. . 「 24 2
 () 12
 () 13 ()
 .< 2014. 8. 12.>
 1 (. . .
)
 . .< 2010. 12. 16., 2013. 3. 23., 2014. 8.
 12., 2017. 10. 19., 2025. 10. 1.>
 5 . (.
 . .)
 (.< 2010. 12. 16., 2013. 3. 23.,
 2014. 8. 12., 2017. 10. 19., 2025. 10. 1.>
 6 (. . .<
 2010. 12. 16., 2014. 8. 12., 2017. 10. 19.>
 [2009. 5. 1.]
 14 () 16 2 “
 ” . < 2013. 3. 23., 2025. 10. 1.>
 1. : 4 1 4
 1
 2. : 8 1 3
 3
 3. (,) : 12 1
 6
 4. () : 12 2 7
 5. () : 12 6
 10
 1 , , .
 . 「 」 36 1
 () .< 2010.
 12. 16., 2017. 10. 19.>
 11 2 “
 .< 2013. 3. 23., 2025. 10. 1.>

. < 2013. 3. 23., 2025. 10. 1.>

14 1

가

. < 2012. 5. 14.,

2013. 3. 23., 2015. 7. 29., 2017. 10. 19., 2025. 10. 1.>

1. 29 1 1 (着色劑) • 가 (識別劑)

• 가 •

2. 30 1

3. 39 1 1 가 •

•

4. 39 1 4 가

• •

[2009. 5. 1.]

18 (•) , • •

14 1 3

.

. < 2013. 3. 23., 2025. 10. 1.>

1 20

, • • . < 2013. 3. 23.,

2023. 12. 12., 2025. 10. 1.>

2 ,

, • • . <

2013. 3. 23., 2025. 10. 1.>

<2023. 12. 12.>

<2010. 12. 16.>

[2009. 5. 1.]

19 () , • •

13 • 14

.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19 2() • 13

14

, , ,

, (• •

•) . <

[2010. 12. 16., 2013. 3. 23., 2017. 10. 19., 2025. 10. 1.>](#)

, 13
14 ()
.< [2017. 10. 19.>](#)

[2009. 5. 1.]

19 3() 14 2 , 2
2 .
[2012. 5. 14.]

3

20 () 16 2 .
1. .
2. .
3. 1 2
16 1
1 1 2
.< [2013. 3. 23., 2025. 10. 1.>](#)
16 3

.< [2014. 8. 12., 2025. 10. 1.>](#)

- 1.
- 2.
- 3.
- 4.

[2009. 5. 1.]

21 () 17 1
1

.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22 () 20 2
3 .

6 1 . “ 9 5
” “ 22 2 ” , “ ” “
” .< [2011. 12. 30.>](#)

[2009. 5. 1.]

4 • < 2009. 5. 1.>

23 (•) 23 2 5 “
” 30 [(船荷證券)
]

. < 2013. 3. 23., 2015. 7. 29., 2025. 10. 1.>

[2009. 5. 1.]

23 2(가) 24 1 3 “
가 ” . < 2024. 8. 7., 2025. 10. 1.>

1. 「 가 」 2 8 가 가 가
가

가. 「 가 」 2 2 가 가 (가
가 가 가 27 1 8)

. 「 가 」 2 2 1 3
2. 「 가 」 2 2 8 가 가
가 가 3 가
가

3. 「 가 」 2 9 가 가 가
1 4 2 4 가

[2019. 3. 28.]

24 (가) 24 3 “ ”
1 1 1 . < 2012. 5. 14.,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25 (•) 25 3 “
” 19 () .

< 2013. 3. 23., 2025. 10. 1.>

1
20 () ,
가 21

(•)

. < 2026. 3. 20.>

[2009. 5. 1.]

25 2() 26 2 1 , (“ ”)

1 “ ” .

< 2025. 10. 1.>

1. 「 」 32 가

2. , .

가

1 10

.< 2025. 10. 1.>

[2016. 12. 26.]

26 (•) 27 1 1 2 “ ” . < 2013. 3. 23., 2025. 10. 1.>

1.

2.

3.

4. ,

5.

6. (減壓殘渣油:

)

7.

[2009. 5. 1.]

5

< 2009. 5. 1.>

27 () 21 1 “ ” 29

10

.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6

28 () 25 1
(「 」 2 1
2 1 3
) , , , , , 가 , [(grease)
, 100 70]

. < 2023. 3. 6.>

1. 「 」 15

2. (引渡)

25 3 4

[2009. 5. 1.]

29 () 25 4 2

(“ ”) 가

5 .

22 (

) ()

. < 2013. 3. 23., 2025. 10. 1.>

1.

2.

3.

4. .

2 「 」 36 1

. < 2010. 12. 16., 2013. 3.

23., 2025. 10. 1.>

2 25

4 23

.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30 () 25 5 1 (

“ ”) 가

5 .

24

. < 2013.

3. 23., 2025. 10. 1.>

2

25

5

25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31 (•) ,

25 6 26

(試料別) 3

, 25 6 15

27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32

[46 2 <2012. 5. 14.>]

33 () 26 2

3

. < 2017.

10. 19.>

1. 가 ,

,

2. <2017. 10. 19.>

3.

, , .

[2009. 5. 1.]

33 2() 26 2 1

가

24

1

.

1

가

1.

2.

3.

2

30

[2009. 5. 1.]

34 () 28 1

28 2

6

[2009. 5. 1.]

35 (•) 29 2 5 “ ” 「 」 70

7

.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7

< 2009. 5. 1.>

36 () 31 6

7 .

•

31

.

31

1

2

“

,

”

“

”

,

“

25

6

”

“

31

7

”

.

< 2012. 5.

14.>

[2009. 5. 1.]

37 (•) 32 1

•

28

.

(

)

(

)

.

1.

2.

1

「

」

36

1

(

)

< 2010. 12. 16.>

1

1

.

,

1

3

.

1. (,)

2. ()

3. 5 (,)

1 2 가 가

, (가

) .< 2013. 3. 23., 2024. 8. 7., 2025. 10. 1.>

37 1 16 2 “

” 1 1 , 3 28

, 32 4 11 2 “

” 14 .< 2013. 3. 23., 2024. 8. 7., 2025. 10. 1.>

32 4 12 2 .

. 가 30

29 . () (.)

. , 32 1

. .

6 .

. .

. 6 1 .

“ 9 5 ” “ 34 4 ” , “ ” “ .

” .< 2011. 12. 30.>

1

.< 2013. 3. 23., 2025. 10. 1.>

9 .

29 2 .

.< 2013. 3. 23., 2025. 10. 1.>

6 10 29 3

. .

[2009. 5. 1.]

38 (.) 32 2

. 33 30

30 .

. < 2014. 8. 12.>

1 「 36 1
(33 2)

.< 2010. 12. 16.>

1 .< 2013. 3. 23., 2025. 10. 1.>

3 .
.
(
.)

.< 2013. 3. 23., 2025. 10. 1.>

4 .

[2009. 5. 1.]

39 () 34 4

가

. < 2011. 12. 30.>

1. <2010. 12. 16.>

2. (, 「 」
)

3. . 38 20

[2009. 5. 1.]

40 () 33 1
31 ()
() ()
.
. < 2014. 8.

12.>

1. ()

2. ()

3. (가
)

4. (가
)

1 . 「 36 1
() .<

2010. 12. 16.>

33 1

32

()

,

•

•

•

,

()

•

.< 2014. 8. 12.>

1.

(

)

2.

3.

4.

•

•

•

2

2

가

33 1

33

()

(

가

)

,

•

•

•

,

()

•

.< 2014. 8. 12.>

•

•

•

1

4

34

(

•

•

)

(

“

”

)

,

35

(

•

•

)

(

“

”

)

•

37 1

16 2

“

”

1

,

3

4

31

33

,

33

3

11

2

“

”

7

.< 2013. 3. 23., 2025. 10. 1.>

33 3

12 2

•

가

30

29

•

(

)

(

•

)

•

•

•

•

5

가 가

가

•

.< 2013. 3. 23., 2025. 10. 1.>

7

• • •

• • • •

45 4 7

, • • • •

• • • •

• • • •

가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41 () 33 1

35

30

36

• • •

.< 2014. 8. 12.>

1 • • 「 」 36

1 (35 2

) .< 2010. 12. 16.>

• • • 1 2

,

(

)

• • 「 」 24 2

()

34 ()

.< 2014. 8. 12.>

[2009. 5. 1.]

42 (•

) 34 1 •

35 2 •

•

17 2 • 3 , 18

19 2 • 17 2 18 1 “ 14

1 3 ” “ 35 1 3 ” , 17 3

“ 14 1 ” “ 35 1 ” , 19 “

13 • 14 ” “ 34 • 35 ” , 19 2 1 “ 13 ”

“ 34 ” , “ 14 ” “ 35 ” , “ ,
 , () ”
 “ . ” , 19 2 2 “ 13 ”
 “ 34 ” , “ 14 ” “ 35 ” , “ (.
 . .) ” “
 ” .< 2010. 12. 16., 2012. 5. 14.>

[2009. 5. 1.]

43 ()
 38 3 20
 3 . 21 “
 17 1 ” “ 36 ” , “ ” “ ” .
 [2009. 5. 1.]

43 2() 40 1 5 “
 ” 16 . < 2025. 10. 1.>
 [2024. 8. 7.]

44 (가) 가
 23 25 . 23 “
 23 2 4 ” “ 39 2 3 ” , 24 “ 24 3
 ” “ 40 2 ” , 25 “ () ” “
 ” “ ” .
 [2009. 5. 1.]

8 < 2009. 5. 1.>

45 () 38 1 2 , ,
 , 「 」 ,
 . , 42 가
 8 . < 2012. 5. 14.>
 38 1 , . . ,
 ()
 . < 2012. 5. 14., 2013. 3. 23., 2017. 10. 19.,
 2025. 10. 1.>

1. 5 · 9 · 9 2 10 , ,
() ()
32 33 ·
()
2. 5 · 9 · 9 2 10 , ,
() ()
32 33 ·
()
3. 17 1 36
4. 18 · 19 37 ·
,
5. 21 23 ,
가
6. 29 가
7. 38 38 2
8. 39
38 2 42
10
.< 2012. 5. 14., 2013. 3. 23., 2025. 10. 1.>
, · , · · , (38
)
1 2 ·
3
· , 29 39 1
.
< 2013. 3. 23., 2025. 10. 1.>
<2014. 8. 12.>
[2009. 5. 1.]
45 2(가) 42 2 1 가
·
1. 42 2 1 1 : 36 2 가
36 3 가
2. 42 2 1 2 : 36 3 가

3. 42 2 1 3 가 : 36 3 가

4. 42 2 1 3 • • : 36 4
가

5. 42 2 1 3 : 36 5 가
42 2 3 1 2 “
”

.< 2013. 3. 23., 2025. 10. 1.>

1. : 1

2. : 4

3. : 2 3

4. <2015. 7. 29.>

1 가

.< 2013. 3. 23., 2025. 10. 1.>

[2009. 5. 1.]

45 3() 42 3 2
10 .

[2024. 8. 7.]

[45 3 45 4 <2024. 8. 7.>]

45 4() 38 4 2 4 “
” . < 2024. 8. 7., 2025. 10. 1.>

1. ,

가. 가

.
「 4
「
」

2.

3. , 38
4 1 2 가

[2021. 4. 20.]

[45 3 <2024. 8. 7.>]

46 () 39 2 2 “
” . < 2010. 12. 16., 2013. 3. 23., 2025. 10. 1.>

1. 가

2.

3. 가

[2009. 5. 1.]

46 2() , .

. 39 2

.

, 「

」 「 」

. < 2010. 12. 16., 2012. 5. 14., 2013. 3. 23., 2014. 9. 22.,

2017. 10. 19., 2025. 10. 1.>

1.

2. 5 . 9 . 9 2 . 10 . 32 33

(1

)

3. () ,

4.

5.

6. (14 1 35 1

)

1 5 .

. . . .

. .

.< 2010. 12. 16., 2012. 5. 14., 2014. 9. 22.>

1. : 2

2. : 1 2

3. : 6

, . . . 39 2 46

2

.< 2013. 9. 17., 2025. 10. 1.>

, . . 1 5

.< 2013. 3. 23., 2013. 9. 17., 2025. 10. 1.>

[2009. 5. 1.]

[32 <2012. 5. 14.>]

47 () 41 2 . < 2012. 5. 14., 2013. 3. 23., 2023. 3. 6., 2025. 10. 1.>

1. , , , , , 가 , :

0.6

2. : 5

3. : 5

4. : 0.3

1

「 」 .< 2012. 5. 14., 2013. 3. 23., 2025. 10. 1.>

41 3

9 .<

2012. 5. 14.>

[2009. 5. 1.]

47 2() 41 2 2 . < 2012. 5. 14., 2021. 4. 20.>

1. 가

2. 가

3. 39 1 8

41 2 2

. 1

30

.< 2016. 12. 26., 2021. 4. 20.>

1. 1 1 : 1

2. 1 2 : 2

3. 1 3 : 2

2

.< 2013. 3. 23., 2025. 10. 1.>

[2010. 12. 16.]

48 () 46 . , . , , , 가 (“ ”) . < 2012. 5. 14., 2013. 3. 23., 2025. 10. 1.>

1. . . 37

(半期) 20

2. 38 ()
15
3. 42
2 5 45 4 7
· · · ·
4. 52 46
2 7
- [2009. 5. 1.]
- 49 <2017. 10. 19.>
- 50 () 46 2 2015 1
1 3 (3 1 1)
· < 2014. 12. 31., 2025. 10. 1.>
2
(2)
· < 2014. 12. 31., 2025. 10. 1.>
1. 16 1 : 2015 1 1
2. 19 3 2 2 , : 2015 1 1
3. 42 1 1 : 2015 1 1
4. 42 2 2 : 2015 1 1
5. <2023. 2. 28.>
[2014. 9. 22.]
- < 281 ,2005. 6. 4.>
- 1 () · , 36 44 , 45
47 49 ·
2006 1 1 ·
- 2 () 31 33
41 1 가
·
- 3 () 9 6
12 6
6 ·
- 4 () ,

30 15 1 .
5 () 45 3

29 .
6 () 가 .
15 2 1 “ 2 8 ” “ 「
」 2 7 ” .

25 .
25. 「 」
가 .
48 2 2 “ 22 3 ” “ 「
」 30 ” .
7 ()

< 328 ,2006. 3. 24.>
() .
()
6 23 .

< 369 ,2006. 10. 4.> (가
)

< 399 ,2007. 6. 11.>
1 () . , 5 2 , 9 2 , 13
2 , 38 2 , 41 2 , 2 , 4 , 17 ,
30 36 2007 7 4 .
2 (가) 24

< 409 ,2007. 7. 19.>

2007 7 28 .

< 1 ,2008. 3. 3.>()

1 () .

2 4

5 () 2#

2\$.

3 , 10 , 14 1 • 3 , 18 5 , 23 , 24 ,

25 1 , 26 , 27 , 35 , 37 5 , 40

6 , 46 1 • 2 “ ” “

” .

4 1 , 5 1 , 8 1 , 9 1 , 11

, 12 4 • 8 , 13 1 , 15 1 1 ,

17 2 , 18 1 • 2 • 3 , 19 , 20 2 , 21 , 23 ,

26 5 , 29 2 • 4 , 30 2 • 3 , 31 2 ,

37 1 • 4 • 6 , 38 1 , 45 2

• 3 • 4 , 47 1 4 , 48

1 • 2 • 3 “ ” “ ” .

2% <64>

< 11 ,2008. 6. 3.>()

1 () . < >

2

3 ()

.

28 1 1 “ 「 」 11 ” “ 「 」 15 ”

.

4

< 14 ,2008. 6. 20.>

2008 6 22 .

< 69 ,2009. 5. 1.>

- 1 () .
- 2 () 12 8 (.
- () 12 8 (.
-) .

< 158 ,2010. 12. 16.>

- 1 () .
- 2 () 1 1 .
- 3 () .
- 2011 12 31 39 .
- 4 () .
- 2011 12 31 3 2 .

< 232 ,2011. 12. 30.>

.

< 250 ,2012. 5. 14.>

- 1 () 2012 5 15 .
- 2 (가) 24 .
- 3 () 43 1 2 .
- 4 () 47 2 .
- 5 () 8 ,
- 2012 5 1 5 20 5 22

6 ()

1

1 1

1

7 ()

2

< 271 ,2012. 10. 5.>()

1 ()

2 ()

,

< 1 ,2013. 3. 23.>()

1 () . < >

2 6

7 () 2%

2^

3 , 10 , 14 1 , 3 , 23 , 24 ,

25 1 , 26 , 27 , 35 , 37 5 , 40 6 , 45

2 2 46 “ ” “

”

4 5 • 6 , 8 6 • 7 , 9 3 • 4 , 12 2

, 9 • 10 • 12 , 13 , 13 4 • 5 , 17

2 , 3 , 18 1 , 2 ,

3 , 19 , 19 2 1 , 20 2 , 21 , 23 , 26 7 , 29 2

, 3 • 4 , 30 2 • 3 , 31 2 , 37 4 •

9 • 10 , 38 3 • 4 , 40 8 , 10 , 45 2

, 3 , 4 , 45 2 3 , 46 2 1

, 3 , 47 1 1 4 , 2 , 47

2 3 , 48 , 1 4 49

“

”

“

”

2 3 “ ” “ ” .
2 2 3 , 4 5 가 • “ ” “ ”

4 2 2), 3 2) 4 “ ” “ ”
” .

5 2 “ ” “ ” .
6 1 1) 3) “ ”
“ ” .

7 2 2), 3 2) 4 “ ” “ ”
” .

8 8 가 2) “ ” “ ”
” .

9 4 “ ” “ ” .
1 , 2 , 3 , 4 , 9 ,
17 , 20 , 22 , 24 , 28
30 “ ” “ ” .
2 2 , 3 2 , 14 , 22
25 , 27 , 29 2 , 36 2
36 5 , 38 1 , 39 47 ,
47 2 , 48 49 “ ” “ ”
” .

2& <63>

< 27 ,2013. 9. 17.>

1 () . , 8, 39 , 43
44 2014 7 1 .
2 () 8 2014 7 1 .

< 79 ,2014. 8. 12.>

1 () .
2 () 12
13 ,
.

3 ()
1 [1 2 가 12 2), 11 2)
12 2)] .

4 ()
2 (2 1)
.

< 84 ,2014. 9. 22.>

1 () .
2 () 46 2 2
.

< 106 ,2014. 12. 31.> (가
)

2015 1 1 .

< 147 ,2015. 7. 29.>

2015 7 29 .

< 230 ,2016. 12. 26.>

1 () 2017 1 1 . , 2 , 8 45
2017 7 1 .

2 () 47 2 1
.

3 ()
.

< 277 ,2017. 10. 19.>

2017 10 19 . , 8 , 9 , 12 , 13 , 14 ,
3 , 4 , 6 , 10 17
2018 7 1 .

< 296 ,2018. 4. 20.>

. , 6 2018 7 1

.

< 319 ,2018. 12. 17.>

2019 1 1 .

< 330 ,2019. 3. 28.>

2019 4 1 .

< 406 ,2020. 12. 31.>

2021 1 1 .

< 417 ,2021. 4. 20.>

2021 4 21 .

< 448 ,2022. 1. 21.> (가)

36

.

< 479 ,2022. 8. 2.>

.

< 502 ,2023. 2. 28.> (

7

)

.

< 500 ,2023. 3. 6.>
2023 7 1 .

< 508 ,2023. 4. 21.>

.

< 530 ,2023. 11. 21.>(2
)

.

< 533 ,2023. 12. 12.>(7)

.

< 571 ,2024. 8. 7.>
2024 8 7 .

< 1 ,2025. 10. 1.>()
1 () . , 5

.

2 4
5 () 2^
2&
2 , 2 2 1 , 2 3 , 3 , 3 2 1
3 , 3 3, 10 , 11 2 , 14 1
, 3 , 23 , 23 2 , 24 , 25
1 , 26 , 27 , 35 , 37 5 , 40 6 , 43 2,
45 2 2 , 45 4 46
“ ” “ ” .
2 , 2 2 1 1 , 2 3 3 , 4 5 • 6 , 12 2
, 9 • 10 • 12 , 13 , 13 5 • 6 ,
17 2 , 3 , 18 1 , 2 • 3 ,

19 , 19 2 1 , 20 2 , 3 , 4 ,
 21 , 23 , 25 2 2 2 , 3 , 26 7 , 29 2
 , 3 • 4 , 30 2 • 3 , 31 2 , 37 4 • 9 •
 10 , 38 3 • 4 , 40 8 , 10 , 45 2
 , 3 , 4 , 45 2 3 , 45 4 3 , 46 2 1
 , 3 • 4 , 47 1 1 4 , 2
 , 47 2 3 , 48 , 1 4 , 50 1
 2 “ ” “ ”

2 2 3 , 4 , 5 가 • , 4 2 가 3),
 2), 3 2), 4 , 5 2 , 6 1
 1) 3) , 7 2 가 3), 2),
 3 2), 4 , 8 8 가 , 2), 1 , 9
 4 , 10 2 1 “ ” “ ”

1 , 2 , 9 , 17 , 22
 , 24 , 28 30 “
 ” “ ”

2 2 , 3 2 , 14 , 22
 25 , 27 , 29 2 , 36 2 36
 5 , 38 , 39 , 39 2 , 40
 47 , 47 2 , 48 49 “
 ” “ ”

2* <54>

< 8 ,2026. 3. 20.>
 2026 3 20 .

< 54 ,2026. 8. 27.> (• •)
 1 () 2026 9 18 .
 2 3
 4 ()

2 3 2 “ 「 • • 」 ” “ 「
 • • 」 ” .

5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영 제42조의4에 따른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4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3개월 경고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2)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이하 "제조등"이라 한다)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2) 그 밖의 가짜 석유제품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2의2)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의2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 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 치·개조하거나 그 사실 을 알면서도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 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 매하였으면서 정량 미 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 업시설을 설치·개조하 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도 그 설치·개조한 영 업시설을 양수·임차하 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정량에 미달되게 판 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 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 된 영업시설이 개조되 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 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7 밖의 경우	사업정지	사업정지	50 등록취소		가

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여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 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 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 우	법 제13 조 제2항 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 조 제2항 제6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처분기준 10)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 조 제2항 제7호			54	

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의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영업장 폐쇄			
2) 국제석유거래업자 등	법 제13조 제3항 제2호	영업장 폐쇄		60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영업장 폐쇄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5호	영업장 폐쇄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영업장 폐쇄			
7)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9)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쇄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영업장 폐쇄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	영업장 폐쇄				

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3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	법 제13조제4항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66	

비촉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제4항 제7호	1개월	3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 10)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 1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경고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 12)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연어시설을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등록취소 또는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2의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3)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4)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4항 제8호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 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3개월	6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	
바) 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제2조 각 호의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1)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영업방법을 벗어나 석유를 접점에서 직접 판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한 경우				
(4) 타인의 석유를 자신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그 석유의 보관을 요구한 자를 대신하여 공급한 경우. 다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업용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석유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타인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고 그 석유의 공급을 요구한 자로부터 대가로 석유대금 등을 받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7)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석유를 자신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않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석유판매업별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거나 석유를 공급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석유를 공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그 밖에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6)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9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			78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호의 2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법 제34			80	

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조 제5호				
7)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34조 제6호	등록취소			
8)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이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7호	등록취소			
9)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법 제34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2	

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 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 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 매하였으면서 정량 미 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 업시설을 설치·개조하 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도 그 설치·개조한 영 업시설을 양수·임차하 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2) 정량에 미달되게 판 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 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 된 영업시설이 개조되 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 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사업정지 일수} \times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times 0.18$$

-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 수출 입업 자	국제 석유 거래 업자	석유판매업자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일반 대리 점/ 용제 대리 점	주유소 /용제 판매소 /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 인 석 유제품 판매업 자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 건에 맞지 않게 된 경 우	법 제14 조 제 1 항 제 3 호	-	-	-	-	5천 만원	3천만 원	4천만 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 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 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 닌 석유제품을 공급	법 제14 조 제 1 항 제 3 호	-	-	-	-	3천 만원	1천5 백 만원	2천만 원	8백만원

88

74

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1억원	1억5천만원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1억원	1억5천만원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6)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4천만원	
7)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8)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한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 당한다)의 경우 나) 그 밖의 가짜석유 제품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 2 억원)	2억원	2억원	-	1억5 천 만원	1억원	6천 만원	3천 만원
9) 법 제29조제1항제 3호를 위반하여 가 짜석유제품을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 로 석유제품·석유화 학제품·석유대체연 료 또는 탄소와 수소 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 운송 또는 보관한 경 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 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 2 억원)	2억원	2억원	-	1억5 천 만원	1억원	6천 만원	3천 만원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법 제14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3 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 2 억원)	1억5 천 만원	2억원	1억5 천 만원	5천 만원	3천만 원	4천만 원	1천만원
11) 법 제39조에 따 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정량에 미달되 게 판매하는 경우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 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 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 에 미달한 양이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5억원 (용제 정제 업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3천 만원	2천 만원	2천5 백 만원	1천 만원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그 밖의 경우		10억 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6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나)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6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다) 등유, 부생연료 유, 바이오디젤, 비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6천만원	3천만원
라) 그 밖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10억 원 (용제 정제업자 2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3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8백만원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법 제35조	1억5천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1항	만원			
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35조 제1항	2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3)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6)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제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1억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 그 밖의 경우		2억원	6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나)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억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다)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5조 제1항	2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라) 그 밖의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억원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배럴 또는 톤) × 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 나. 건설단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지상 원유 저장시설을 말하며,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
- 라. 연간 대출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 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비축 미달 물량 × 국내 평균 수입단가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기한부 어음 금리)

- 가.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석유비축량(석유대체연료 비축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석유비축의무량(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
- 나.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다음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한다)의 국내 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 1)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프로판
 - 3)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제품. 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대체연료. 다만,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대체연료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 다.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 라.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

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

1. 게시문 내용

게시문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게시일: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게시기간

가. 게시기간은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게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게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4. 게시장소 및 방법

가. 위반사업자가 주유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시문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입구 쪽 캐노피)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주유소 외의 사업자인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시문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장의 주 출입문 옆에 붙여야 한다.

5. 게시문 작성방법

가. 사업정지의 경우

가짜석유제품 (위반행위 내용)로 사업정지 중
(정지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가짜석유제품 (위반행위 내용)로 과징금 부과

(게시기간: 0000. 00.00 ~ 0000. 00. 00)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1) 규격: 500cm × 90cm
- 2) 색상: 바탕(흰색), 글자(위반행위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은 적색, 그 외는 검은색)
- 3) 글자크기: 입구주변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 4) 재질: 비, 바람 등에 쉽게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을 것

※ 게시문 예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부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12.16>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1.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	비고
원유 수입	수입량①														
	수입대행 양수②														
	공제	납사 생산량													
		용제 생산량													
		아스팔트 생산량													
	계③														
	공제 후 수입량 (④=①+②-③)														
제품수 입 및 부산물	완제품														
	수입대행 양수														
	휘발유 생산용 반제품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 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부산 물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 판매업자의 부산물 생산 량														
	계⑤														
	총수입량(⑥=④+⑤)														
제외 항목	수출량														
	국제 병커링(bunkering)														
	국내 병커링														
	비축용 판매량														
	LPG의 공업원료용 판매량														
	윤활기유 생산용 B-C유 투입량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 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 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 출입업자에게 판매한 양														
	재고변동물량														
	수입대행 양도														

[illegible]

비고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illegible]

비교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1. 검사 시기

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운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운활유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 1)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석유제품(운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 또는 자기가 생산한 운활유를 판매 또는 인도할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차량의 위쪽 주입

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3)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와 처리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 1)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검사결과 해당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제품에 대한 회수 및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합격 판정을 받은 윤활유에 대하여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마다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확인증을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확인증을 붙이거나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 4)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1호다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짜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
-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1. 검사인력 기준

가. 채용 인원

-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 및 자체검사자는 제1호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이하 "검사인력"이라 한다)을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장비 5개당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인력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인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2)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3)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자는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4)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이 중 2명은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5)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6) 품질검사기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 7) 자체검사자가 석유제품의 자체검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인력의 요건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화학·화학공학·고분자공학·물리학·기계공학·환경공학·자동차공학 또는 이화학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서 화학공업·환경공업·기계공업 또는 자동차공업 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분석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검사시설의 기준

가. 시험실을 확보하고 흡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를)·저온냉장고·증류수제조기·항온건조기·시험대·급수시설 및 초자류(硝子類)를 갖추어야 한다.

나. 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아스팔트 또는 윤활유의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석유제품에 한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검사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장비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검 사 장 비	규 격
옥탄값 시험기	리서치법
증류시험기 2종	냉각장치 부착형
원심분리기	1800rpm 이상
동판부식 시험기	중탕온도: 50℃ ~ 150℃
증기압 시험기	중탕온도: 37.8℃
산화안정도 시험기	휘발유용
검 시험기	중탕온도: 150℃
미량 황분 시험기	산화적정법 또는 자외선형광법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AAS
자외선 분광광도계	UV/Vis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PONA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벤젠, 방향족화합물 함량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올레핀 함량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산소함량, 메탄올
X-ray 황분 시험기	방사선여기법
연소관식 황분 시험기	
잔류 탄소 시험기	콘라드손법 또는 마이크로법
전기로	1000℃ 이상
동점도 시험기	중탕온도: 30℃ ~ 100℃
유동점 시험기	실온 ℃ -60℃
연점 시험기	눈금범위: 0 ~ 50mm, 눈금단위: 1mm 이하
세이볼트 색도계	+30 ~ -60
세탄값 시험기	
인화점 시험기 3종	펜스키마텐스밀폐식, 태그밀폐식, 클리블랜드 오픈컵식

밀도 시험기	0 ~ 3g/m ³
필터 막힘점 시험기	냉각중탕온도: -35℃이하
운환성 시험기	마모흔경: μm
아닐린점 시험기	U자관
침입도 시험기	중탕온도: 25℃
신도 시험기	중탕온도: 25℃
아스팔트 절대점도 시험기	진공형
점도계 2종	세이볼트형, 앵글러형
박막가열 시험기 2종	회전팬형, 공기욕조형
동결안정도 항온조	항온온도: -5℃ 유지
저온 걸보기점도 시험기	측정온도범위: -5℃ ~ -30℃
내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165.5℃ 항온조, 교반모터
중화가 시험기	전위차측정용
ASTM 색도계	색도 0 ~ 8
방청성능 시험기	60℃ 항온조, 교반모터
항유화성 시험기	중탕온도 54.82℃ 유지
기포성 시험기	중탕온도 24℃, 100℃ 유지
절연파괴 시험기	측정전압: 0 ~ 100kV
미량수분 시험기	칼피서법
열안정도 시험기	항온조: 상온 ~ 180℃, 회전판
터빈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항온조: 95℃, 1000시간
브룩필드 점도계	측정온도: 상온 ~ -40℃
열처리유 냉각성능 시험기	은봉, 기록계 포함
압축기유 노화성능 시험기	중탕온도: -170℃
내하중성 시험기	탐켄식
유전정접 시험기	절연손실 측정범위: 0 ~ 30%
비유전율 시험기	측정온도: 60Hz, 80℃
절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중탕온도: 120℃
체적저항률 시험기	절연저항 측정용
PH 측정기	PH범위: 1 ~ 14
표면장력 시험기	듀누이 표면장력계
지문제거 및 제막성 시험기	지문제거장치 포함
도막(도료 도포막) 경도 시험기	도막제거 측정용
염수분무 시험기	염수분무실 및 분무탑형
포장격납 시험기	기상청 1호 규격
시편 연마기	부식성 시험용
방폭형공기 항온욕조	항온오븐: 상온 ~ 250℃

저온공기 항온욕조	저온부착성 시험용
주도 시험기	다이얼게이지 0.1mm 측정, 초시계
혼화 주조기	10만회용
적점 시험기	유증탕온도: 0 ~ 250℃
수세내수도 시험기	온도조절장치: 38 ~ 79℃
증발량 시험기	상온 ~ 163℃
그리스 산화안정도 시험기	99℃ 항온조
현미경	10μm 이하 측정용
저온 토크(torque) 시험기	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습윤 시험기	항온조: 50℃
그리스 겔보기점도 시험기	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내하중성 시험기	4구식

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검 사 장 비	규 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 500ppm 이하
황 함량 분석기	검출한계 1ppm 이하
증기압 시험기	증탕온도 40±1℃[측정게이지: LPG(0 ~ 250/1750psi/kPa)]
밀도 시험기	증탕온도 15±0.5℃
동판부식 시험기	증탕온도 40±1℃
증발잔류물 시험기	최소 측정눈금 0.05ml
수분 시험기	최대 허용압력 4.8MPa

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나목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시설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시설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와 항온항습기·마이크로밸런스 및 냉각팬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	수량
원동기동력계	1식
차대동력계	1식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배출가스 분석장치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자료처리장치	원동기동력계, 차대동력계 각 1식
매연 측정기	1식

바.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	수량	비고
보일러(노통연관형)	1식	1 ~ 3톤/시간
버너(로터리분무형)	1식	1 ~ 3톤/시간
배출가스 분석장치	가스, 먼지 측정용 각 1식	~
저장안정성 측정기	1식	적외선 분광광도법 사용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간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과 처분 시 품질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유종을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	법 제2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1항제5호	1개월	3개월	
6)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승인취소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승인취소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승인취소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승인취소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승인취소
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승인취소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등

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를 함유한 것만을 말한다]를 수입하였을 때에는 품질검사 전에 제37조제4항에 따른 품질시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3)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 1)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

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대체연료의 회수 및 보관 중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3)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짜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
-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0. 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서식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주 화요일
2) 중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월 15일
3) 원유(친환경정제원료를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의2서식	매월 15일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 수입실적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매월 15일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2. 석유수출입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주 화요일
2) 중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월 15일
3) 원유 및 석유제품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의2서식	매월 15일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0호서식	매월 15일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3. 석유판매업자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3호서식	매주 화요일
2) 그 밖의 석유제품	수탁법인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3호서식	매월 15일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4호서식	매주 화요일
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라목의 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수탁법인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5호서식	매월 15일
라. 주유소에서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	별지 제45호서식	매주 화요일
마. 용제판매업자: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7호서식	매주 화요일

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석유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수탁법인의 종합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1)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매월 15일
2) 용제수급상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자.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6호서식	매월 15일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수급상황기록부·수출입상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매월 15일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3호서식	매월 15일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4호서식	매월 15일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5호서식	매월 15일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자인 경우: 비축재고현황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8호서식	매월 15일
7.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 수송 현황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9호서식	매월 15일
8. 그 밖의 보고사항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원가·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나. 석유소비자				
1) 용제소비자: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7호의2서식	보고를 명하는 서면에서 정한 날짜까지
2) 용제 외의 석유소비자: 석유소비상황	산업통상부장관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보고를 명하는 서면에서 정한

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통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날짜까지 매월 마지막 주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
라. 제1호가목3)에 따른 친환경정제 원료 보고에 대한 공사의 종합통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매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비고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10. 1.>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공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그 달의 총판매량에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2.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3.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은 그 수수료를 법 제25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제45조의3 관련)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서식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로 투입하거나 투입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53호서식	최초로 투입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전년도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53호서식	매년 3월 31일까지
2.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용내역 보고 수리 업무 결과보고	산업통상부장관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없음	매년 4월 30일까지

비고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자보고”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4일 신고 4일
------	------	------	-----------------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생산 유종	

신청 (신고) 내용	정제 시설	시설명	정제능력	소재지	착공 예정일	완공 예정일
			kl/년			
	저장 시설	저장제품	총 규모(기수)	소재지	착공 예정일	완공 예정일
			kl(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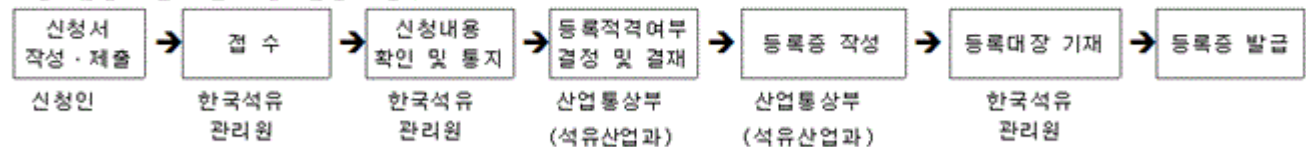
15.	16.	17.
15.	16.	17.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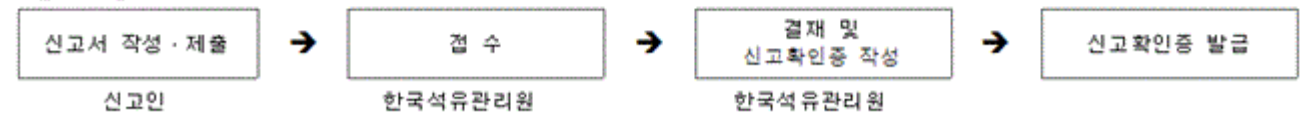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한국석유관리원이 사장 확인 사항	수수료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 등록신청 또는 조건부 등록신청의 경우 〉



〈 신고의 경우 〉



석유정제업 [] 변경등록신청서 [] 변 경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4일 신고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석유저장시설(소재지·규모) [] 석유정제시설(소재지·정제능력)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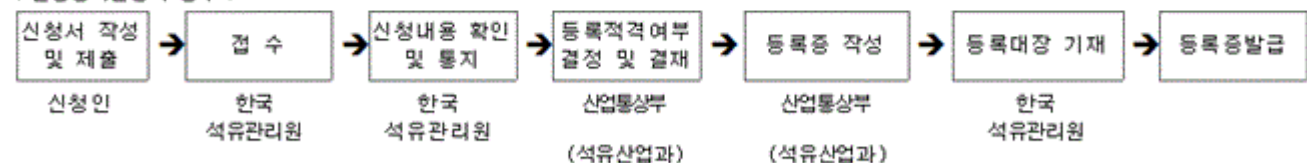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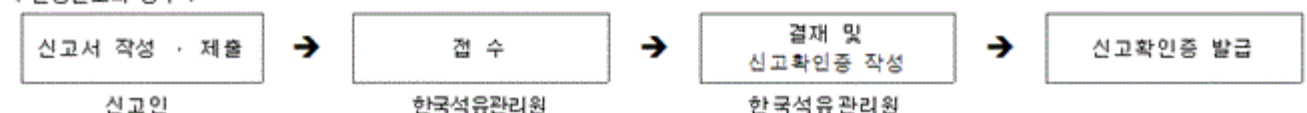
첨부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동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처리절차

<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 변경신고의 경우 >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제 호

석유정제업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정제시설 소재지:
5. 생 산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09.5.1>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전화:)			
생 산 유 종				
생 산 능 력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 (기)	㎧ (기)	㎧ (기)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기타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제 호

석유정제업(아스팔트·유탄기유·유탄유) 신고확인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정제시설 소재지:
5. 생 산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직인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2009.5.1>

석유정제업(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 신고대장				
< 신 고 사 항 >				
신 고 번 호		신 고 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전화:)			
생 산 유 종				
생 산 능 력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kl(기)	kl(기)	kl(기)	kl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기타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신고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석유수출입업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수출입제품명		사업개시일		최초 통관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저장 시설	총규모(기수)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kl(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한국석유관리원이 사장 확인 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입대행계약서 1부(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만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

graph LR
    A[신청서 작성 및 제출] --> B[접수]
    B --> C[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C --> D[예비검정 및 서류 열람 및 열람재]
    D --> E[예비검정 작성]
    E --> F[예비대장 기재]
    F --> G[예비검정 결과 통지]
  
```

신청인 한국
소유관리원 한국
소유관리원 시·도지사 시·도지사 한국
소유관리원

제 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저장시설 소재지:
5. 수 출 입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09.5.1>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수 입 형 태	(대행, 판매, 자기 사용, 수출, 기타)			
수출입 제품명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kl(기)	kl(기)	kl(기)	kl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석유저장시설 소재지 [] 석유저장시설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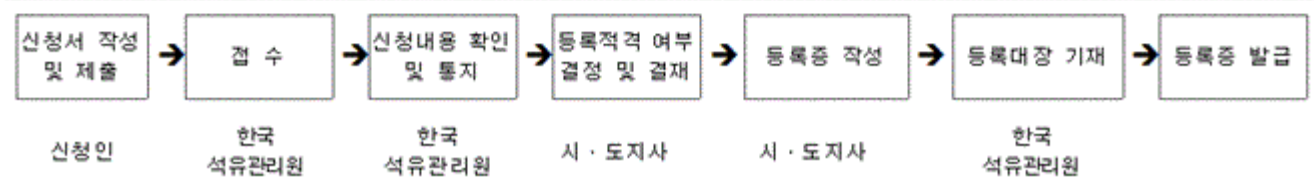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귀중

첨부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 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구분	적용 및 적용대체연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	4일
------	------	------	----	----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거래 유종	

신고 내용	저장 시설	저장제품	총 규모(기수)	소재지
			kL(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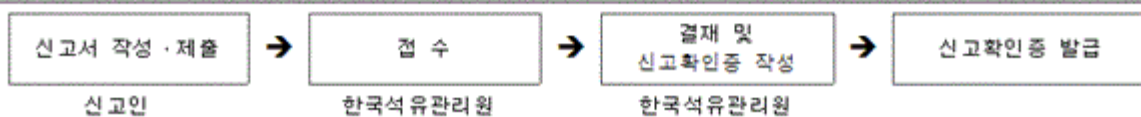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현황 자료 1부(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	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석유저장시설(소재지·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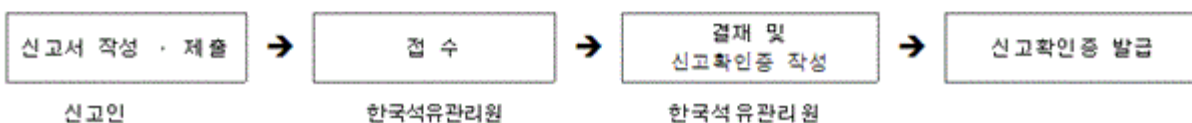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에 따른 지위 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제 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저장시설 소재지:
5. 거 래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직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17. 10. 19.>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 신 고 사 항 〉				
신 고 번 호		신 고 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그 밖의 시설	합계
	KL(기)	KL(기)	KL(기)	KL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그 밖의 사항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신고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수송장비 수(대)		자본금(억원)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한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동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 · 도		시 · 도		한국 석유관리원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kl(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m ²)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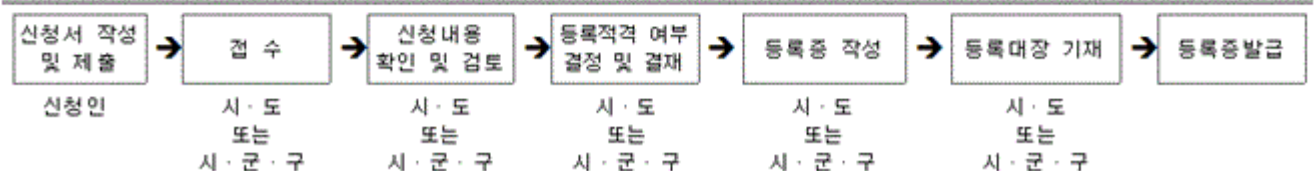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	---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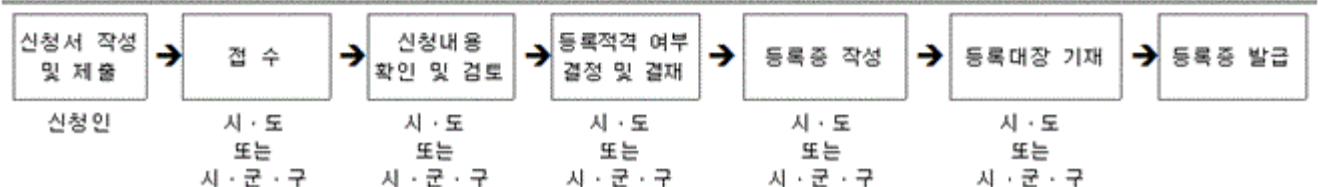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주 생산품명
부산물 유종
부산물 생산능력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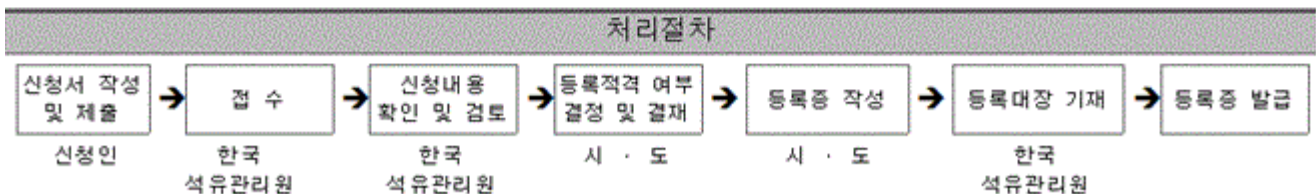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한국 석유관리원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한국 석유관리원	→	등록자격 여부 결정 및 결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등록증 작성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등록대장 기재 한국 석유관리원	→	등록증 발급
--------------------	---	----------------	---	--------------------------	---	----------------------------------	---	-------------------------	---	---------------------	---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개)					
	수송장비 수(대)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없음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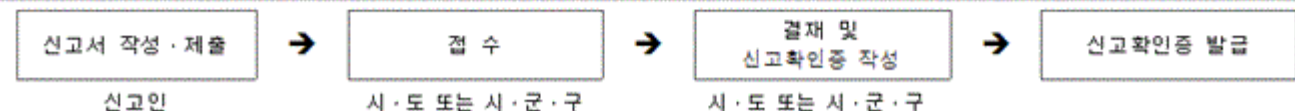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 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판매 업자	상호	(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취급 유종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kℓ)			
	수송장비	대수(대)	주유소 부지면적 (㎡)		
		용량(kℓ)			
		차량번호	주유기 수(대)		
기타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 이동판매차량 변 동 사항(차량대수, 차량번호, 적재용량)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대장			
＜ 신 고 사 항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판매업자	상호	(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수송장비	대수(대)	취급 유종	
	용량(kℓ)		
	차량번호		
기타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교: 변경사항란에는 변경신고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 이동판매차량 변동 사항(차량대수, 차량번호, 적재용량)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 호

**석유 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생연료유통판매소)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소 재 지:
4. 취 급 유 종:
5. 저장시설의 수: 주유기의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소 재 지:
4. 취 급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2.16>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				
< 동 룝 사 항 >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공장 소재지	(전화:)			
주 생산품명				
부산물 유종				
부산물 생산능력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기)	㎧(기)	㎧(기)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기타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서 [] 변 경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설의 소재지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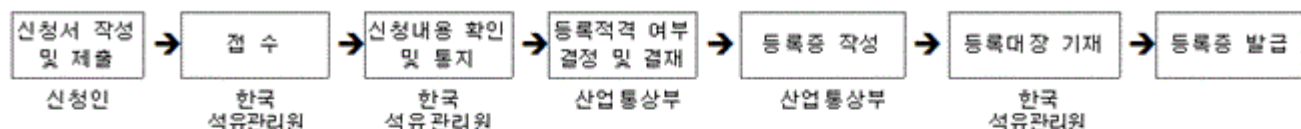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귀중)
한국석유관리원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10조제 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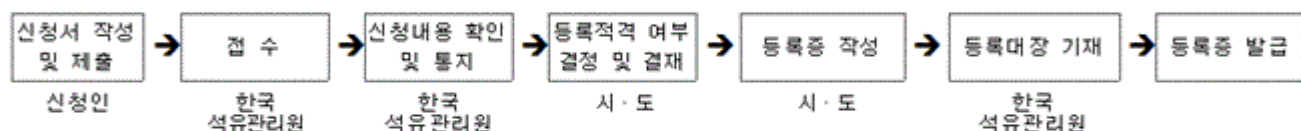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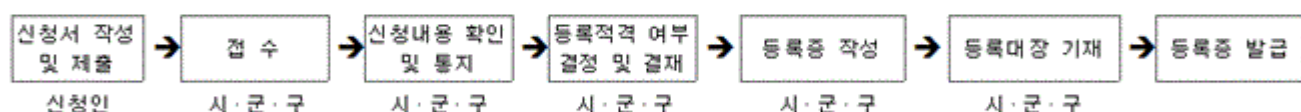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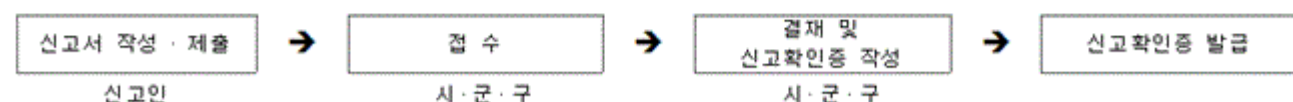
< 변경등록(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



< 변경신고의 경우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 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0. 19.>

☐ 석유정제업 ☐ 개 시
☐ 석유수출입업 ☐ 휴 업 신고서
☐ 국제석유거래업 ☐ 폐 업
☐ 석유판매업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	---	---	--------

사업의 휴업·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연	월	일	사업 재개시
------------	---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02	

☐ 석유 수입
☐ 석유 판매
☐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 (부과금 납부의무자)		상호					
		무역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유예분: 월 일까지)			납부 장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점
납부 구분	번호	수입신고 수리일 (판매일)	수입신고 번호	HSK 번호	수 량 (리터/톤)	단가 (원)	부과금 (원)
납부	1						
	2						
	3						
		부 과 금 합 계					
징수 유예	1						
	2						
	3						
		부 과 금 합 계					
면제	1						
	2						
	3						
		부 과 금 합 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귀중

첨부서류	1. 수입신고필증(또는 선하증권) 사본(석유 수입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석유 판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사실증명서(석유판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3. 20.>

석유 수입(석유 판매·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 수 관 계 좌 소 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7407-1 산업통상부
납 부 자	성명(상호)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주 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신 고 분	원
		납기 내 금액	원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인]

은 행

우체국

석유 수입(석유 판매·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수납기관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 수 관 계 좌 소 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5970-1 산업통상부
납 부 자	성명(상호)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주 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신 고 분	원
		납기 내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인]

은 행

우체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석유 수입
☐ 석유 판매
☐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	----

부과금 납부의무자	상호	성명(대표자)
	무역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수입업자	상호	성명(대표자)
	무역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부과금 납부일	년 월 일	납부 장소					
통관 예정일	년 월 일	선하증권번호 (B/L)					
일련번호	수입신고번호/ 선하증권번호	수입신고 수리 예정일(판매일)	HSK 번호	수 량 (리터/톤)	단가 (원)	부과금 (원)	비고
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유예·제외)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 귀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유예·제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인]

※ 비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석유 수입(석유 판매·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첨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검사 분야 및 검사 유종	검사 분야	검사 유종	
	☐ 석유제품 품질검사		
	☐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성능평가 제외)		
	☐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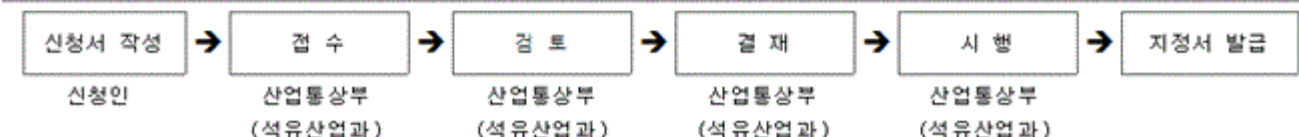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수수료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1부 4.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제 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 재 지:
5. 검 사 분 야:
6. 검 사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검사 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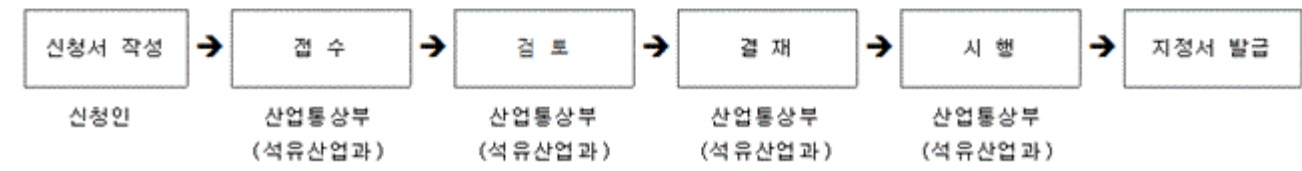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자체검사자 승인서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 재 지:
5. 검 사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검사자로 승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5.1>

품질검사 기록대장

페이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회사명	③소재지	④작성 연월일

일련번호	검사업체명	검사제품	시 료 채 취		시험 결과 (합격·불합 격 판정)	비 고
			일 시	장 소		

비 고

1. 시료 채취의 장소란에는 저장소의 위치 및 저장탱크번호를 표시할 것
2. 비고란에는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의 위치(쪽)를 표시할 것
3.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에는 시료 채취일, 저장탱크번호 및 시험방법을 표시할 것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

기 관 명

수신자 **산업통상부장관**(석유산업과장)
(경유)

제 목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6항·제3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및 제48조에 따라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업체명	제품명	당 월				연 간 누 계			
		검 사	합 격	불합격	%	검 사	합 격	불합격	%

22
ㄷ .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형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 / m²(재활용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0. 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제조시설	시설명	제조능력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저장시설	저장제품	총규모(기 수)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제조유종(油種)	수출입유종 (油種)	사업개시일		최초 통관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1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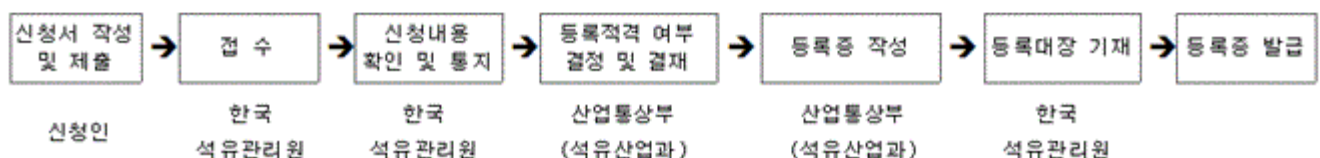
* 신청내용 중 제조시설의 기재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
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석유대체연료 [] 제조·수출입업 [] 개 시
[] 판매업 [] 휴 업 신고서
[] 폐 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	------------------

사업의 휴·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제4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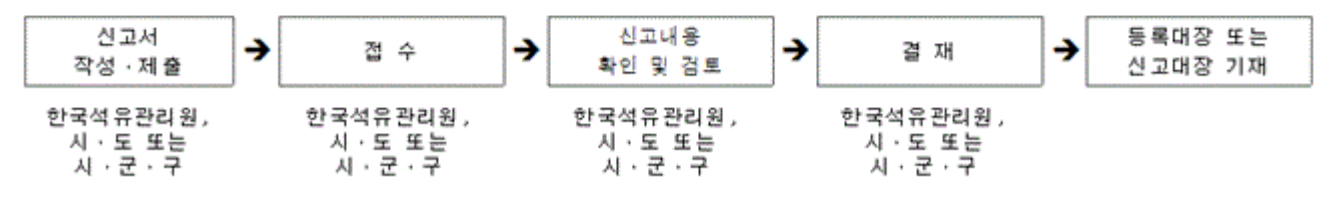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첨부서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제 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정제시설 소재지:
5. 생 산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별지 제29호의3서식] <신설 2009.5.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대장				
< 동 룝 사 항 >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제조시설의 소재지	(전화:)			
생 산 유 종				
생 산 능 력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 (기)	㎧ (기)	㎧ (기)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기타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변경내용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소재지·규모)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소재지·제조능력)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2조제 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품질시험서(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한국 석유관리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ℓ (개)	
	수송장비 수(대)		자본금(억원)
	기타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도지사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형서 작성
및 제출 → 수
정 → 신청서
제출 → 검토
결과 통보 → 검토
결과 통보 → 검토
결과 통보

신청인: _____ 처리기관: 시·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kl(개)
	주유기 수	대	부지면적	m²
	기타			

사업개시 예정일

20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152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심사(제출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 결정(합격/불합격)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최종 합격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 부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기타		

사업개시 예정일

10. 11. 1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서류 심사 및 서류 보완 요청 → 과목별 점수 산출 → 점수 순서대로 순위 결정 → 순위대 기재 → 최종 순위 발표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 등록대장					
< 동 록 사 항 >					
동 록 번 호				동 록 일	년 월 일
판 매 업 자	상 호	(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취 급 유 종	
보 유 시 설	저장시설	소 재 지			
		용량(kℓ)			
	수송장비(대)			주유소 부지면적(m ²)	
				주 유 기 수(대)	
기 타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제 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소 재 지:
4. 취 급 제 품:
5. 저장시설의 수: 주유기의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도 원 인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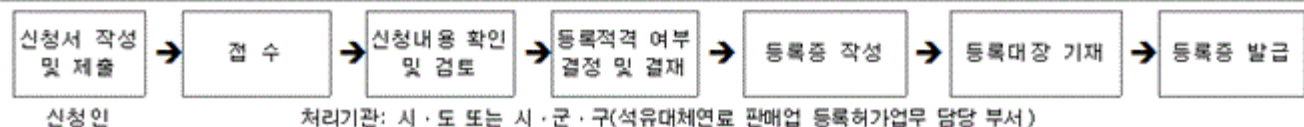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동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석유정제업자)

작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⑤해당 주간	년	월	주
	도	군	면	리 번지						

⑤유 종		⑥판 매 처											
		⑦주유소			⑧일반대리점			⑨일반판매소			⑩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내수 판매량 (kl)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 매출 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kl)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 매출 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kl)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 매출 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kl)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 매출 단가 (원/ℓ)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 유	보일러(1호)												
	실내(2호)												
경 유	자동차용												

※ 비고: 영 별표 4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작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동	④대표자	⑤해당 연 월								
	도	군	면			리	년 월						
⑤유 종		⑥판 매 처											
		⑦주유소			⑧대리점 (일반·용제)			⑨판매소 (일반·용제· 부생연료유)			⑩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내수 판매 량 (kl)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 매출 단가 (원/l)	내수 판매 량 (kl)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 매출 단가 (원/l)	내수 판매 량 (kl)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 매출 단가 (원/l)	내수 판매 량 (kl)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 매출 단가 (원/l)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일러 (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중유 (B-A유)	1.0% 이 하												
	1.0% 초 과												
중유 (B-B유)	1.0% 이 하												
	1.0% 초 과												
중유 (B-C유)	1.0% 이 하												
	1.0% 초 과												
	3.0% 이 하												
	3.0% 초 과												
부생 연료유	등유형 (1호)												
	중유형 (2호)												
아스팔트유(원/kg)													
용제	1호												

※ 비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6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 부생연료유판매소)

작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⑤해당 연월	년	월
	도	군	면	리					

⑤유 종		⑥판 매 처											
		⑦주유소			⑧일반대리점			⑨판매소 (일반·용제)			⑩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판매 량 (kl)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 량 (kl)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 량 (kl)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 량 (kl)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알레(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중유 (B-A용)	10%이하												
	10%초과												
중유 (B-B용)	10%이하												
	10%초과												
중유 (B-C용)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용제	1호												
부생 연료유	등유형 (1호)												
	중유형 (2호)												

※ 비고: 영 별표 4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월간 판매
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6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판매가격 보고서
(주유소)

작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소재지	시	구	번지	④대표자		⑤변경일	년	월	일
	도	군	면 리 번지						

⑦유 종		⑧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일러(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 비교: 영 별표 4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m²)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급지 80g/㎡]

(제2쪽)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발신기관명)

1. 석유판매업자 현황

가. 대리점, 주유소 등 현황

(년도 기분)

(단위: 개소)

구분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 판 매 소
전반기 말	등록업체 수					
	영업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사항	신규등록					
	등록취소					
	폐업					
	사업정지					
	사업휴업					
	휴업 후 사업재개					
	영업개시					
금반기 말	등록업체 수					
	영업업체 수 -저장능력(kℓ) -수송장비(대)					
조건부 등록 현황	전반기 말 등록수					
	금반기 중 신규등록					
	금반기 중 본등록					
	기타					
	금반기 말 등록수					

나. 일반판매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전반기 말	금반기 중 변동사항		금반기 말
		신고 수리	폐 쇄	
일반판매소				

(제3쪽)

다. 이동판매차량 현황

(단위: 대)

구분			전반기 말	금반기 중 변동상황		금반기 말
				증가	감소	
이동판매 차량	주유소	1kl 이상				
		1kl 미만				
	일반판매소	1kl 이상				
		1kl 미만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현황

□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 현황

(년도 기분)

(단위: 개소)

구 분		대 리 점	주 유 소	판 매 소
전반기 말	등록업체 수			
	영업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신규등록			
	등록취소			
	폐업			
	사업정지			
	사업휴업			
	휴업 후 사업재개			
	영업개시			
금반기 말	등록업체 수			
	영업업체 수 -저장능력(kl) -수송장비(대)			

(제4쪽)

3. 신규등록, 휴업, 폐업 및 휴업사업 재개 업체의 명세

판매업의 종류	구분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변동사유발생 연월일

비고: 판매업의 종류에는 석유판매업[대리점(일반 및 용제),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주유소 및 판매소)으로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4.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 명세

판매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연월일

(제5쪽)

5.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가. 일반대리점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구 분		계 약 대 상 업 체 명						
							기타	계
전반기 말	· 계약체결 업체 수 ·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 신규등록 업체 수 · 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 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 폐업 업체 수 · 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 계약체결 업체 수 ·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대리점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합니다.

나. 주유소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구 분		계 약 대 상 업 체 명						
							기타	계
전반기 말	· 계약체결 업체 수 ·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 신규등록 업체 수 · 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 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 폐업 업체 수 · 휴업 업체 수							
금반기말	· 계약체결 업체 수 ·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합니다.

(제6쪽)

다. 둘 이상의 혼합제품 판매 주유소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구 분		계 약 대 상 업 체 명				
		A상표+ B상표	A상표+ 비상표	A상표+B상 표+C상표	기 타	계
전반기 말	·계약체결 업체 수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 상황	·신규등록 업체 수 ·자기 상표로의 변경업체 수 ·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폐업 업체 수 ·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계약체결 업체 수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자기 상표로의 변경업체 수”란 단수상표에서 자기 상표로 변경등록·보고한 업체의 수를 말합니다.

라. 둘 이상의 혼합제품 판매 주유소 내역(영업 업체 기준)

시·군·구(시·도)	주유소	공급자 및 유종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 현황

가.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 현황

구 분		계 약 대 상 업 체 명					
						기 타	계
전반기 말	·계약체결 업체 수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 상황	·신규등록 업체 수 ·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폐업 업체 수 ·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계약체결 업체 수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합니다.

(제 7쪽)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 현황

구분		계 약 대 상 업 체 명					
						기타	계
전반기 말	· 계약체결 업체 수 ·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 상황	· 신규등록 업체 수 · 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 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 전입 업체 수 - 전출 업체 수 · 폐업 업체 수 · 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 계약체결 업체 수 ·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합니다.

다. 둘 이상의 혼합제품 판매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 현황

구 분		계 약 대 상 업 체 명				
		A상표+ B상표	A상표+ 비상표	A상표+B상 표+C상표	기 타	계
전반기 말	· 계약체결 업체 수 ·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 상황	· 신규등록 업체 수 · 자기 상표로의 변경업체 수 · 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 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 전입 업체 수 - 전출 업체 수 · 폐업 업체 수 · 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 계약체결 업체 수 · 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자기 상표로의 변경업체 수"란 단수상표에서 자기 상표로 변경등록·보고한 업체의 수를 말합니다.

라. 둘 이상의 혼합제품 판매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명세(영업 업체 기준)

시·군·구(시·도)	주 유 소	공급자 및 유종

발 신 기 관 명

수신자 산업통상부장관

(경유)

제 목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

1. 유종별 품질검사 현황

(단위: 건수)

유 종			당 월				연 간 누 계			
			검사 건수	합격	불합격		검사 건수	합격	불합격	
						%				%
석유 제품	휘발유	1호								
		2호								
		소 계								
	등 유	1호								
		2호								
		소 계								
	경 유	자동차용								
		선박용								
		소 계								
	중 유									
	용 제									
	부생연료유									
아 스 팔 트										
윤 활 유										
석유 대체 연료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 연 역 청 유									
	유 화 연 료 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바이오가스연료유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쪽)

2. 업자별 품질검사 현황									
(단위 : 업소수)									
구 분		당 월				연 누 계			
		검사 업소 수	합격	불합격 %	검사 업소 수	합격	불합격 %		
석유 제품	정 제 업 자								
	수 출 입 업 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주 유 소								
	일 반 대 리 점								
	용 제 대 리 점								
	일 반 판 매 소								
	용 제 판 매 소								
	부생연료유통판매소								
	소 계								
석유 대체 연료	제 조 업 자								
	수 출 입 업 자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소 계								
합 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에 따라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수급상황 기록부

페이지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1. 작성자 부분

회사코드	업태코드	저유소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소재 지역코드	해당 연 월 주	제품코드	단위
						년 월 주		

2. 총괄 부분

가. 공급

나. 수요

입하량	출하량

3. 입하 부분

구분	거래 일자	거래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지역 코드	업태코드	형태	면세	입하량	시·군 코드	수송 수단
3										
3										
3										
3										

4. 출하 부분

구분	거래 일자	거래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지역 코드	업태 코드	형태	면세	출하량	시·군 코드	수송 수단
4										
4										
4										
4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수급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백상지 80g/m²)

수급상황 기록부

페이지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1. 작성자 부분

회사코드	업태코드	저유소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소재 지역코드	해당 연 월 주	제품코드	단위
						년 월 주		

2. 총괄 부분

가. 공급

월(주)초 재고량	입하량	생산량	제품 간 이동량	이동된 제품량

나. 수요

정제투입량	출하량	정제연료량	자기 사용량	월(주)말 재고량

3. 입하 부분

구분	거래 일자	거래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지역 코드	업태코드	형태	면세	입하량	시·군 코드	수송 수단
3										
3										
3										
3										

4. 출하 부분

구분	거래 일자	거래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지역 코드	업태 코드	형태	면세	출하량	시·군 코드	수송 수단
4										
4										
4										
4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 × 364mm(백상지 80g/㎡)

수출입상황기록부

페이지	
-----	--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1. 작성자 부분

①사업자등록번호	②회사명	③작성회사코드	④작성회사 업태코드	⑤해당 연월

2. 수출입 부분

[illegible]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수출입상황기
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m²)

용제수급상황기록부 (용제생산업자·수출입업자)

페이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작성자 사항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해당 연주	년 주
-----	--	-------------	--	----	--	----------	-----

제품 사항

코드	11	71	72	73	74	75
제품명	용제원료	용제1호	용제2호	용제3호	용제4호	용제5호
코드	76	77	78	79	80	
제품명	용제6호	용제7호	용제8호	용제9호	용제10호	

총괄 부분	구분	월요일 재고량	구매량	생산량	원료사용량		자기 사용량	판매량	일요일 재고량	단위: 리터
					용제 생산	용제 외 생산				
	1									

구매 부분	구분	구매 일자	구매회사 사업체명	구매회사 대표자	구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구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회사 소재지코드	구매회사 업태코드	구매량
	3								
	3								
	3								

판매 부분 (용 제사 업자 에 대한 거래 상황)	구분	판매 일자	판매회사 사업체명	판매회사 대 표 자	판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 소재지코드	판매회사 업태코드	판매량
	4								
	4								
	4								
	4								
	4								
	4								
	4								
	4								

판매 부분 (실수 요자 에 대한 거래 상황)	구분	판매 일자	판매회사 사업체명	판매회사 대 표 자	판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판매회사 연락처	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 소재지코드	용도	판매량
	4									
	4									
	4									
	4									
	4									
	4									
	4									
	4									

비고: 용제사업자이면서 다른 사업(제조업 포함)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도 용제 구매 시 용제사업자로 보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거래상황 기록부(일반대리점용)

페이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공통부분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해당 연 주	제품코드
				년 주	

1카드총 괄부분	월(주)초 재고량	입하량	출하량	증감량	자기 사 용량	월(주)말 재고량	단위	kℓ
								2

입출하 구분	입출하 SEQ	카드 구분	거 래 일 자	거래 회사 사업체 명	거래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회사 소재지 코 드				거래 회사 업태 코 드				면세		입출 하량	수송수단									
																	공 급 자				공급받는자					
T	R	V	P	T	R	V	P																			
입하 부분	1	3								1	2	3	1	2					1	2	3	4	5	6	7	8
	2	3								1	2	3	1	2					1	2	3	4	5	6	7	8
	3	3								1	2	3	1	2					1	2	3	4	5	6	7	8
	4	3								1	2	3	1	2					1	2	3	4	5	6	7	8

출하 부분	1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	4						1	2	3	1	2			1	2	3	4	5	6	7	8
	3	4						1	2	3	1	2			1	2	3	4	5	6	7	8
	4	4						1	2	3	1	2			1	2	3	4	5	6	7	8
	5	4						1	2	3	1	2			1	2	3	4	5	6	7	8
	6	4						1	2	3	1	2			1	2	3	4	5	6	7	8
	7	4						1	2	3	1	2			1	2	3	4	5	6	7	8
	8	4						1	2	3	1	2			1	2	3	4	5	6	7	8
	9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0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1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2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3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4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5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6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7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8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9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0	4						1	2	3	1	2			1	2	3	4	5	6	7	8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황 기록부(주유소용)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리터
-----	---------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해당 연 주	년 주
	도 군 면 리 번지			

1카드	제품코드	주초 재고량	입하량	출하량	증감량	자기 사용량	주말 재고량
총 괄							

3카드	제품코드	거래일자	공급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입 하 량
입 하					

4카드	제품코드	거래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출 하 량
타사 출하				

5카드	차 량 구 분	차량 코드	제품코드				
차량 출하량	승 용 차	0022					
	버 스	0025					
	화 물 차	0029					
	기 타 차 량	0032					

6카드	농림·수산업	1100					
	광업	2100					
차량 외 출하량	식품·담배 제조업	3110					
	섬유제조업	3200					
	목재업	3300					
	제지·인쇄업	3410					
	화학제품제조업	3520					
	요업	3610					
	금속·기계 제조업	3810					
	기타 제조업	3900					
	건설업	5100					
	에너지산업	4101					
	육상운수보조 서비스업	7116					
	가 정 용	8302					
	음 식 점 업	6310					
	숙 박 업	6320					
	기 타 상 업 용	8301					
	공 공 기 관 용	9120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리터
------	--	----------	--	--------

③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⑤해당 연월(주)	년 월(주)
	도	군	면	리 번지				

1카드	⑥제품코드	⑦월(주) 초 재고량	⑧입하량	⑨출하량	⑩증감량	⑪자기 사용량	⑫월(주) 말재고량
총 괄							

3카드	⑥제품코드	⑬거래일 자	⑭공급회 사명	⑮사업자등록번호	⑯입 하 량
입 하					

4카드	⑥제품코드	⑰거래회사명	⑱사업자등록번호	⑲출 하 량
타사 출하				

⑥ 제품 코드	차량 출하량(5카드)		차 량 외 출 하 량 (6카드)					
	승용차 (0022)	화물차 (0029)	농 립 수 산 업 (1100)	기타 제조업 (3900)	건설업 (5100)	가정용 (8302)	음식업 (6310)	숙박업 (6320)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페이지					
------	--	--	--	--	--

공통 부분	② 회사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소재지 코 드	⑤해당 연월	⑥제 품	
					43	44
					부생연료유 (등유형)	부생연료유 (중유형)

1카드 (총괄 부분)	⑦월 초 재고량			⑧입하량			⑨출하량			⑩증감량			⑪자기 사용량			⑫월 말 재고량			⑬단 위	kℓ 2

입출하구분	입출하 S EQ	⑭ 카드본 구	⑮ 거래사업명 회사체	⑯ 거래사업 자등번호	⑰ 거래회사 소재지 코드			⑱ 거래사업 코드	⑲ 거래 형태			⑳ 면세		㉑ 입출하량	㉒수송수단										
									이관	판매	교환	특	부		공급자				공급 받는 자						
															T	R	V	P	T	R	V	P			
입하부분	1	3							1	2	3	1	2					1	2	3	4	5	6	7	8
	2	3							1	2	3	1	2					1	2	3	4	5	6	7	8
	3	3							1	2	3	1	2					1	2	3	4	5	6	7	8
	4	3							1	2	3	1	2					1	2	3	4	5	6	7	8

다트 100만 점	1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	4								1	2	3	1	2					1	2	3	4	5	6	7	8
	3	4								1	2	3	1	2					1	2	3	4	5	6	7	8
	4	4								1	2	3	1	2					1	2	3	4	5	6	7	8
	5	4								1	2	3	1	2					1	2	3	4	5	6	7	8
	6	4								1	2	3	1	2					1	2	3	4	5	6	7	8
	7	4								1	2	3	1	2					1	2	3	4	5	6	7	8
	8	4								1	2	3	1	2					1	2	3	4	5	6	7	8
	9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0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1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2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3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4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5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6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7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8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9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0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 (용제대리점 · 용제판매소)

페이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작성자 사항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해당 연주	년 주
-----	--	-------------	--	----	--	----------	-----

제품 사항

코드	11	71	72	73	74	75
제품명	용제원료	용제1호	용제2호	용제3호	용제4호	용제5호
코드	76	77	78	79	80	
제품명	용제6호	용제7호	용제8호	용제9호	용제10호	

총괄 부분	구분	월요일 재고량	구매량	판매량	사용량(제조)	자기 사용량	일요일 재고량	단위: 리터
	1							

구분	구분	구매 일자	구매회사 사업체명	구매회사 대 표 자	구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구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회사 소재지코드	구매회사 업태코드	구매량
구매 부분	3								
	3								
	3								

구분	구분	판매 일자	판매회사 사업체명	판매회사 대 표 자	판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 소재지코드	판매회사 업태코드	판매량
판매 부분 (용 제사 업자 에 대한 거래 상황)	4								
	4								
	4								
	4								
	4								
	4								
	4								

구분	구분	판매 일자	판매회사 사업체명	판매회사 대 표 자	판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판매회사 연락처	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 소재지코드	용도	판매량
판매 부분 (실 수요 자에 대한 거래 상황)	4									
	4									
	4									
	4									
	4									
	4									
	4									

비고: 용제사업자이면서 다른 사업(제조업 포함)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도 용제 구매 시 용제사업자로 보고하고, 산업통상부장
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 (용제소비자)

페이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작성자 사항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해당 기간

제품 사항						
코드	11	71	72	73	74	75
제품명	용제원료	용제1호	용제2호	용제3호	용제4호	용제5호
코드	76	77	78	79	80	
제품명	용제6호	용제7호	용제8호	용제9호	용제10호	

총괄부분 (단위:리터)	월초 재고량	구매량	사용량		월말 재고량
			제품생산	제품생산 외	

구매부분	구매 일자	구매회사 사업체명	구매회사 대 표 자	구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구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구매량

사용부분 (제품생산)	사용량	생산제품	생산량	용제혼합비율

사용부분 (제품생 산 외)	사용량	용도	폐용제량

비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용제소비자인 경우 다른 사업(제조업 포함)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도 용제소비자로 보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용제소비자의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5. 10. 1.>

송유관 수송 현황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회사명	
------	--

②해당 연월	
--------	--

(단위 : kl)

③구 간	④제품코드	⑤제품명	⑥거래회사	⑦수송량	⑧관로 재고량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송유관 수송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m²)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10.12.16>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5.1>

공표 현황 보고서

지방자치체단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도 군 면 리 번지			
⑤불법 거래행위				
⑥처분내용	사업정지			
	과징금(백만원)			
	등록취소			
	형사고발			
⑦처분기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 하는 기간)	처분 시작일		처분 종료일	
공표장소 (인터넷 주소 포함)			공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m²)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서

보고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정제시설 소재지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내역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투입량
	투입공정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친환경정제원료의 공정도 등 설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첨부서류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로 투입하거나 투입하는 친환경 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019. 3. 15.] [2019 - 35 , 2019. 3. 7.,]

()044 - 203 - 5224

- 1 () 『 』
 , .
- 2 () 『 (" ") 31 2
 .
- 3 () 31 3 (" 가
 ")
 (" ") 31 3 4
 . , (가
)
 .
- 4 () .
 4 ℓ .
 2 ℓ .
 ,
 .
1. : () 5
2. , : 30
- 5 () 36 1 7 2 (2)

6 ()

7 () 가
 (" "

가
 (. .)

8 () 7
 가 15 1
 1
 2 가

9 () 47 1 1
 0.296 .

10 () 47 2 9
 가

11 ()

12 () 2016 7 1
 3 (3 7 31)

< 2005 - 120 ,2005. 12. 30.>

() 2006 1 1 .
()

< 2006 - 37 ,2006. 4. 13.>

< 2007 - 150 ,2007. 12. 27.>

< 2009 - 68 ,2009. 4. 9.>

< 2009 - 193 ,2009. 8. 21.>
2009 8 24 .

< 2010 - 231 ,2010. 12. 24.>

< 2012 - 67 ,2012. 3. 26.>
2012 4 1 .

< 2012 - 212 ,2012. 9. 7.>
1 () .
1 .

가

< 2016 - 21 ,2016. 2. 5.>
1 () .

< 2019 - 35 ,2019. 3. 7.>

1 () 2019 3 15 .

【별표】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는 버스, 트럭, 건설기계 및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80%와 제2호의 바이오디젤(BD100) 20%을 혼합한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부피%)	20±3 (겨울용: 10±3)	EN14078
유동점(℃)	0이하(겨울용:-18이하)	ASTM D6749
인화점(℃)	40이상	KS M ISO 2719
동점도(40℃, mm ² /s)	1.9이상 ~ 5.5이하	KS M ISO 3104
증류성상(90% 유출온도, ℃)	360이하	KS M ISO 3405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KS M ISO 10370
황분(mg/kg)	30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2이하	KS M ISO 6245
세탄가(세탄 지수)	45이상	KS M ISO 5165 KS M ISO 4264
동판부식(100℃, 3h)	1이하	KS M ISO 2160
필터막힘점(℃)	-16이하	KS M 2411
밀도@ 15℃(kg/m ³)	815이상 ~ 845이하	KS M 2002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KS M 2115
천산가(mg KOH/g)	0.10이하	KS M ISO 6618
윤활성 @60℃ (HFRR 마모흔경, μm)	460이하	KS R ISO 12156-1

주) 1. 겨울용 기준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 까지 적용한다.

주) 2.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15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에 적용한다.

주) 3.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은 11월과 4월중에 한하여 10(±3)~20(±3)을 적용할 수 있다.

2.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BD100)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기준	시험방법
항 목			
지방산메틸 에스테르함량(무게%)		96.5 이상	KS M 2413, EN 14103
인화점(℃)		120 이상	KS M ISO 2719
동점도(40℃, mm ² /s)		1.9 이상 ~ 5.0 이하	KS M ISO 3104
잔류탄소분(무게%)		0.1 이하	KS M ISO 10870
황분(mg/kg)		10 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1 이하	KS M ISO 6245
동판부식(50℃, 3h)		1 이하	KS M ISO 2160
필터막힘점(℃)		0 이하	KS M 2411
밀도(15℃, kg/m ³)		860 이상 ~ 900 이하	KS M 2002
수분(무게%)		0.05 이하	KS M ISO 12937
고형불순물(mg/kg)		24 이하	EN 12662
전산가(mg KOH/g)		0.50 이하	KS M ISO 6618
총 글리세롤(무게%)		0.24 이하	KS M 2412
모노글리세라이드(무게%)		0.80 이하	KS M 2412
디글리세라이드(무게%)		0.20 이하	KS M 2412
트리글리세라이드(무게%)		0.20 이하	KS M 2412
유리글리세롤(무게%)		0.02 이하	KS M 2412
산화안정도(110℃, h)		6 이상	EN 14112
메탄올(무게%)		0.2 이하	EN 14110
알칼리 금속 (mg/kg)	(Na + K)	5 이하	EN 14108, 14109
	(Ca + Mg)	5 이하	EN 14538
인(mg/kg)		10 이하	EN 14107

주) 1.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15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에 적용한다.

주) 2. KS M 2413 시험방법은 식물성 원료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적용한다.

3.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증유에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한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화제는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혼합되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립자상태로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첨가비율은 3.0부피% 이하이어야 하며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지 않고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수분(부피%)		5.0 이상 30.0 이하	KS M ISO 3733
황분(무게%)		1.0 이하	KS M 2414
회분(무게%)		0.1 이하	KS M ISO 6245
침전물(무게%)		0.2 이하	KS M ISO 3735
인화점(℃)		60 이상	KS M ISO 2592
금속분 (mg/kg)	Cd 및 그 화합물	1 이하	AAS 또는 ICP
	Cr 및 그 화합물	1 이하	
	Pb 및 그 화합물	1 이하	
	As 및 그 화합물	1 이하	

- 주) 1. 지역별 황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인화점 측정 시 품질기준 이상의 온도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3. 수분함량은 성능평가지 인정받은 수분함량의 ± 5.0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유화연료유의 수분함량은 5.0% 이상 30.0%이하이어야 한다.

4. 바이오중유

바이오중유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기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로서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기준	시험방법
항 목			
인화점(℃)		70 이상	KS M ISO 2719
동점도(50℃, mm ² /s)		15 이상 ~ 80 이하	KS M ISO 3104
잔류탄소분(무계%)		5 이하	KS M ISO 10370
황분(무계%)		0.05 이하	KS M ISO 8754
회분(무계%)		0.10 이하	KS M ISO 6245
동판부식(50℃, 3h)		1 이하	KS M ISO 2160
유동점(℃)		27 이하	KS M ISO 3016
밀도(15℃, kg/m ³)		991 이하	KS M ISO 3675, KS M ISO 12185
수분(무계%)		0.30 이하	KS M 0010
전산가(mg KOH/g)		25 이하	KS M ISO 6618
알칼리 금속 (mg/kg)	Na	50 이하	EN 14108
	Ca	30 이하	ASTM D7111
	K	50 이하	EN 14109
요오드가(g/100g)		120 이하	KS M 0065
질소(무계%)		0.3 이하	KS M 2112
바나듐(mg/kg)		50 이하	ASTM D7111
Si + Al + Fe(mg/kg)		200 이하	
인(mg/kg)		30 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5 이하	KS M ISO 3734
총발열량(kcal/kg)		9,000 이상	KS M 2057

(20241214)

:
: hazardtop@gmail.com
: 2026. 9. 18



가